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6.

SMI 안보경영연구원
Security Management Institute

안보경영연구원(SMI)

안보경영연구원(SMI: Security Management Institute)은 국회 소관 민간 연구 기관으로서 2005년 3월 3일 황동준박사(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SMI는 국가안보 및 국방과 관련된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사회 제 분야의 다양한 국방, 안보 관련 연구과제 및 컨설팅사업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국내 최고의 민간 국방/안보 종합연구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SMI 조직은 연구기획 및 관리를 전담하는 연구기획본부와 대외 협력 및 홍보를 위하여 대외협력실을 두고 있으며, 각 분야별 연구전문 그룹은 안보국방정책연구센터, 재난비상대비연구센터, 국방경제연구센터, 인사복지연구센터, 군수시설연구센터, 기술방위산업연구센터, IT연구센터, M&S연구센터, 비용분석연구센터, 사업평가센터, 경영컨설팅센터, 국제사업연구센터 등 12개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MI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무기체계 전문연구기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특례 지정 연구기관으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구 네트워크 중심의 탄력적인 경영을 통하여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MI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지정 공익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후원자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SMI 안보경영연구원 Security Management Institute

135-871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8-1번지 동홍빌딩 9층

전화 : +82-2-544-5872

팩스 : +82-2-544-5939

e-mail : smi@smikorea.org

인터넷 : http://www.smikorea.org

제 출 문

육군참모총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육군본부에서 의뢰한『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6.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책임 : 김 기 정
연구참여 : 김 영 규
양 윤 석

목 차

I. 서 론 ····· **9**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9

1.2. 연구목적 및 범위 ····· 10

1.3.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 11

II. 육군 수당체계 현황 및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필요성 ····· 41

2.1. 보수 법령체계 ····· 14

2.2. 군인 및 군무원 수당체계 ····· 18

2.3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논리 및 필요성 ····· 23

2.4 소결론 ····· 33

III. 군 특수성 및 일반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당 개선방안 ····· 53

3.1 기본개념 ····· 35

3.2 군인/일반공무원/경찰 수당 비교 ····· 37

3.3 미지급 및 축소지급 수당 ····· 43

3.4 장기동결 수당 ····· 54

3.5 신설 및 확대 수당 ····· 69

IV.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 96

4.1 외국 사례분석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 96

4.2 시사점 ····· 104

4.3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 106

V. 결론 및 건의 ····· 108

5.1 결론 ····· 108

5.2 건의 ····· 111

참고문헌 ····· 112

부 록

부록#1. 봉급 및 일반수당 현황 ····· 115

표 목 차

<표 2-1> 국가공무원 수당체계표 ····· 17
<표 2-2> 군인보수정책 변천과정 ····· 19
<표 2-3> 급여관련 국방부 추진 국정과제 ····· 21
<표 2-4> 병사 봉급 인상계획 및 예산반영 ····· 21
<표 2-5> 군인보수법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의 관계 ····· 23
<표 2-6> 군 직업의 특수성 ····· 27
<표 2-7> 근무여건 ····· 28
<표 2-8> 군과 사회의 주거여건 비교 ····· 29
<표 2-9> 공무원과 군인의 미흡/미지급 수당 비교 ····· 33
<표 2-10> 수당 개선방안 ····· 34
<표 3-1> 일반공무원/군인/경찰 수당 비교 ····· 37
<표 3-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 39
<표 3-3> 일반공무원/경찰/군인 보수수준 비교표 ····· 40
<표 3-4> 경찰공무원 수당 지급 현황 ····· 41
<표 3-5> 봉급비교(4급 1호봉기준 : 군인, 공안, 경찰/소방, 일반공무원) ····· 41
<표 3-6> 수당 분석결과 주요내용 ····· 42
<표 3-7> 당직근무비 공무원/군인 비교 현황 ····· 48
<표 3-8> 정부기관 일・숙직비 지급현황 ····· 48
<표 3-9> 유사직종(경찰,소방공무원)일・숙직비 지급현황 ····· 48
<표 3-10> 당직근무비 세부개선 내용 ····· 49
<표 3-11> 당직근무비 산출근거 ····· 49
<표 3-12> 직책별특정업무비 지급현황 ····· 50
<표 3-13> 경찰공무원 기능별 주요 특정업무 경비 ····· 51

<표 3-14> 일반공무원 특정업무비 지급현황 ····· 52
<표 3-15> 일반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52
<표 3-16> 군・경 해외파견수당 현황 ····· 56
<표 3-17> 임무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재평가 ····· 57
<표 3-18>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 가중치 재평가 ····· 58
<표 3-19> 특수근무수행에 따른 등급 가중치 대상 확대 ····· 58
<표 3-20> 특수근무수행에 따른 등급 조정시 등급 및 지급금액 ····· 59
<표 3-21> 수당 등급별 지급비율 상향 조정표 ····· 59
<표 3-22> 계급별 교통보조비 지급현황 ····· 60
<표 3-23> 파견 부대별 해외파견근무수당 인상후 지급액 ····· 60
<표 3-24> 부사관 장려수당 변천과정 ····· 61
<표 3-25> 부사관 장려수당 개선된 인상액 ····· 62
<표 3-26> 주택수당 추진경위 ····· 64
<표 3-27> 주택수당 변천과정 ····· 64
<표 3-28> 주택수당 집행현황 ····· 64
<표 3-29> 전국평균 월세금 및 전세금 현황 ····· 65
<표 3-30> 주택수당 개정안 ····· 65
<표 3-31> 1996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액 ····· 66
<표 3-32> 1997년 하위계급 업무추진교통비 지급액 ····· 67
<표 3-33> 2012년 교통보조비 지급금액 ····· 67
<표 3-34> 교통보조비 인상액 ····· 68
<표 3-35> 교통보조비 지역별 차등지급 방안 ····· 69
<표 3-36> 교통보조비 지역별 차등지급시 결정금액 ····· 70
<표 3-37> 경찰의 대우공무원 선발결과 현황 ····· 70
<표 3-38> 대우공무원/군무원 수당 지급현황 ····· 70
<표 3-39> 2013년 대우공무원 수당 비교표 ····· 71

<표 3-40>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신조문(예) ····· 72
<표 3-41> 군인사법 제000조 대우군인/필수실무요원선발 신조문(예) ····· 72
<표 3-42> 대우군인 선발 구비요건 ····· 73
<표 3-43> 대우군인 수당 연차별 추진계획 ····· 73
<표 3-44> 대우군인 수당 반박논리 및 정당성 확보 ····· 74
<표 3-45> 해군 함정수당 지급현황 ····· 75
<표 3-46> 연도별 특전부사관 선발 현황 ····· 75
<표 3-47> 연도별 특전부사관 임관 및 지원률 현황 ····· 76
<표 3-4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신조문(예) ····· 77
<표 3-49> 특수임무출동수당 연차별 추진계획 ····· 77
<표 3-50> 선진국의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지급현황 ····· 78
<표 3-51>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지급대상 / 금액 ····· 79
<표 3-52>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1조의4 신조문(예) ····· 79
<표 3-53>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 81
<표 3-54> 군인 계급별 결혼 후 이사횟수 ····· 81
<표 3-55> 가족이전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 금액 ····· 82
<표 3-56> 가족이전시 소요금액 산출기준 ····· 82
<표 3-5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1조의5 신조문(예) ····· 82
<표 3-58> 공군조종사와 육군(AH-1S)조종사의 임무수행 여건비교 ····· 83
<표 3-59> 공군조종사 수당 인상 관련 신문기사 ····· 84
<표 3-60> 최근 육군항공과 공군전투기 추락사고 현황 ····· 84
<표 3-61> 육군항공 조종사의 주요훈련 실적 ····· 85
<표 3-62> 연간 육군 항공기 주・야간 비행실적 ····· 85
<표 3-63> 항공수당 인상액 ····· 85
<표 3-64> 공군전투기 조종사의 업무수당 인상액 ····· 86
<표 3-65> 군인장려수당 지급액 ····· 88

<표 3-66> 장려수당 1호 관련 주요장비 가격비교 ····· 89
<표 3-67> 특수지근무수당 추진경위 ····· 93
<표 3-68>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금액 ····· 93
<표 3-69> 특수지근무수당 변천과정 ····· 94
<표 3-70> 캐나다군의 군별 수당체계 ····· 95
<표 3-71> 캐나다군 위험지역 근무 개월수 등급 ····· 95
<표 4-1> 미군의 계급별 봉급액 ····· 96
<표 4-2> 미군의 수당체계 ····· 98
<표 4-3> 일본군의 계급별 봉급액 ····· 99
<표 4-4> 일본군의 수당체계 ····· 100
<표 4-5> 프랑스군의 수당체계 ····· 101
<표 4-6> 캐나다군의 계급별 봉급액 ····· 102
<표 4-7> 캐나다군의 수당체계 ····· 103
<표 4-8> 한국 및 외국군의 보수체계 ····· 104
<표 4-9> 각국의 봉급비율 ····· 105
<표 4-10>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 107

그 림 목 차

<그림 1-1> 문헌조사 연구절차 ····· 11
<그림 1-2> 연구수행 절차 ····· 13
<그림 2-1> 보수 법령체계도 ····· 14
<그림 2-2> 보수 체계도 ····· 18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군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군의 특수성 반영에 제한, 공무원 대비 축소 지급 수당 등에 의한 사기저하 요인의 해결, 국정감사 시 제기된 장기간 동결 수당의 개선대책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요청되어 연구가 제기 되었음.

○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통합됨으로 인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수체계 유지 제한

○ 일반 공무원 대비 미지급되거나 축소 지급되는 수당이 많음으로 인해 군인의 복지 및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되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 장기간 동결되어 군인의 사기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지적을 받아오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수당은 해외파병수당, 부사관 장려수당, 주택수당, 교통보조비 등이 있음.

○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봉급의 인상액을 결정함으로 독자적인 인상율 적용 제한

○ 군 특수성/일반공무원 대비 축소 또는 미지급되는 수당 다수로 형평성 미흡

○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서 군에서 독자적인 인상율 적용의 제한, 일반공무원 대비 형평성 미흡, 수당의 복잡성에 따라 통합 및 단순화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필요성

○ 따라서, 군인 수당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수체계 개선 논리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특수성 반영을 위한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제정 등의 논리수립
- 공무원 대비 군의 열악한 수당 체계 현실 분석 및 개선안 논리 제공
- 장기적 동결 수당에 대한 인상 범위 및 해결 대안 제시
- 타국 사례 벤치마킹 등에 의한 수당체계의 단순화 논리 수립

2 연구목적 및 범위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인 수당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육군을 중심으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수체계 개선 논리를 제시하여 육군의 인사관리 및 복지정책에 기여하기 위함.

□ 연구범위

○ 제기부서 요구내용 : 과업 지시사항

□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

□ 군 특수성 / 일반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당의 개선방안을 도출

○ 미지급되는 수당의 신설을 위한 논리적 근거 및 축소 지급되는 수당의 확대방안 마련

□ 장기동결 수당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인상범위를 제시

□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수당을 단순화 및 범주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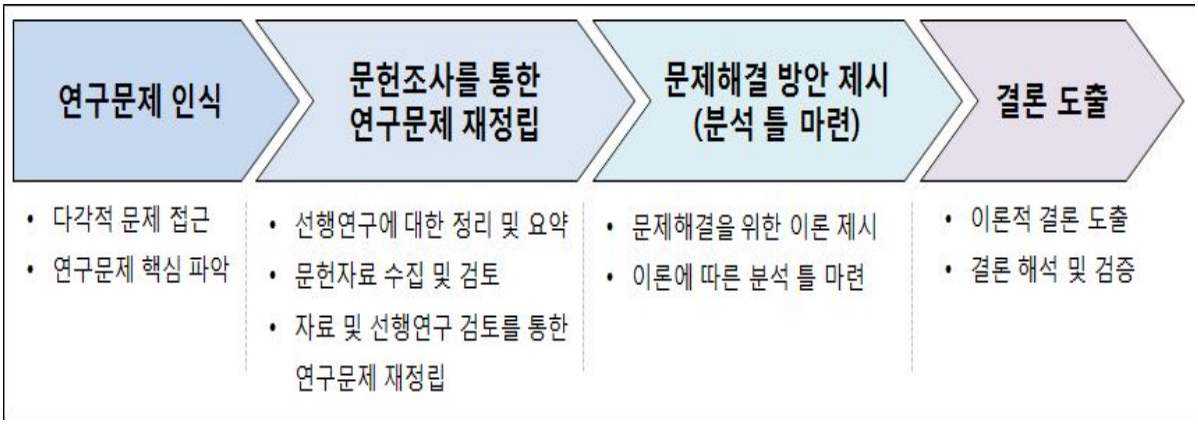
3 연구 방법 및 수행절차

□ 연구방법 개요

○ 제기부서의 과업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문헌조사, 사례분석, 관계기관 방문토의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 문헌조사 연구

○ 보수체계 및 군의 특수성에 대한 문헌을 인터넷, 관련기관 방문 및 수집, 도서관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획득 및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 인식에서 해결방안 제시에 이르는 논리에 반영하였음.



<그림 1-1>문헌조사 연구절차

□ 사례분석

○ 수당체계의 단순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선진 외국의 사례 중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미국의 사례 : 보수표 구성, 우수인력 확보책으로서의 군인급여 철학, 기본급 결정, 수당체계 분석
- 일본의 사례 : 급여지급 근거, 봉급수준, 수당의 분류 분석
- 프랑스의 사례 : 급여결정 권한 근거, 수당체계 분석
- 캐나다 사례 : 단체교섭에 의한 급여결정, 총보수 관점의 급여책정, 급여수준, 수당 구조와 수준 분석

□ 관계기관 방문 토의

○ 군 보수체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부, 안전행정부, 각 군의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군 보수체계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토의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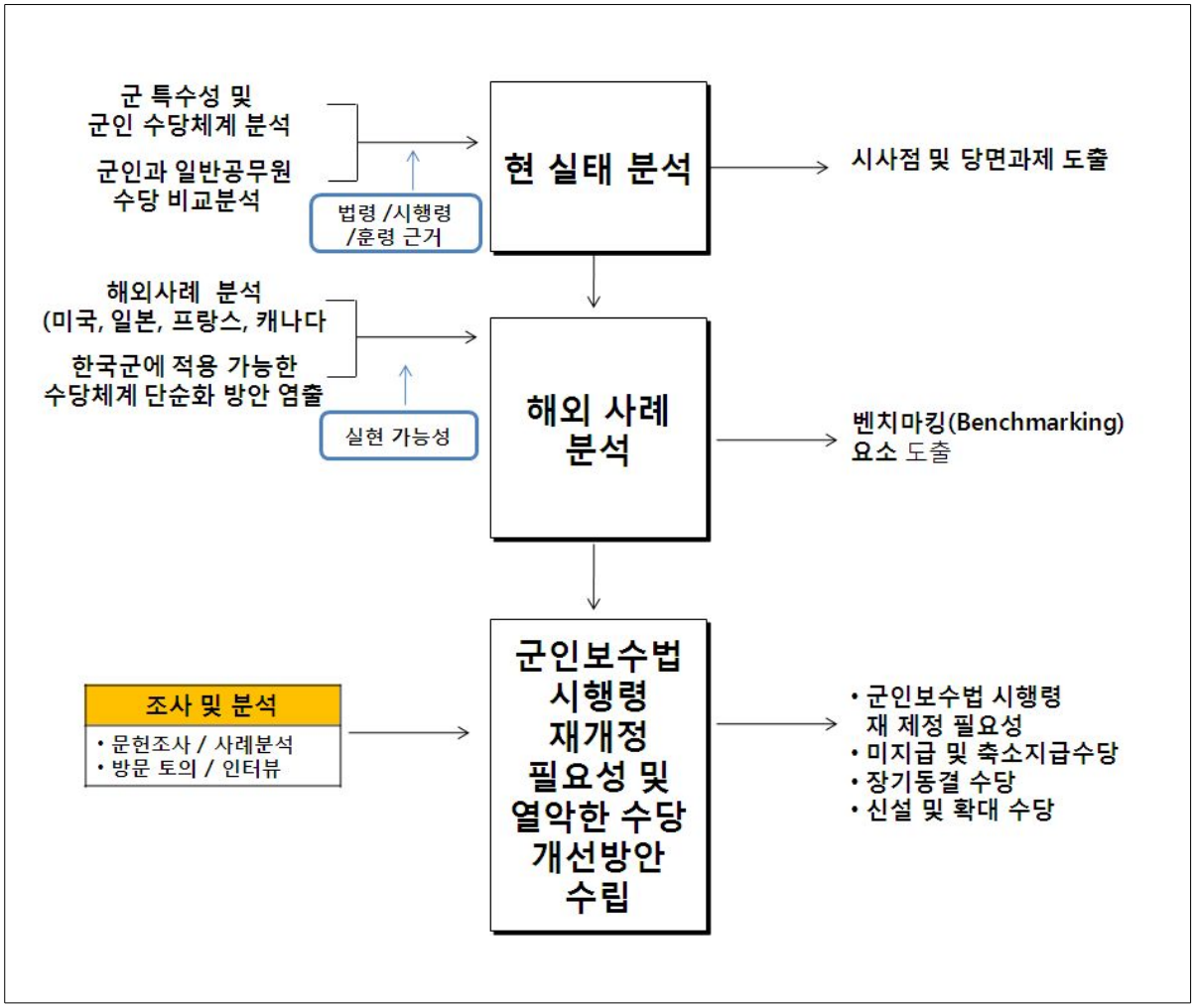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방문 목적	군 보수체계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협의
방문 시기	2013.4.29.~5.31
방문 기관	• 국방부(수당 담당관), 안전행정부(수당/급여 담당관), 경찰청(급여담당관) • 육군(인사참모부 보수체계장교), 특전사(인사담당관), 항작사(인사담당관)

□ 전문가 및 핵심관계자 대상 인터뷰

○ 군 보수체계 제도 및 운용 분야에 대하여 본 연구진이 구상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업무부서 핵심 관계자와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함.

구 분	내 용
인터뷰 목적	수당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 토의
인터뷰 시기	2013.5.13 ~ 6.16
인터뷰 대상	• 국방부(보수체계담당), 육군(보수체계 담당) • 안전행정부(보수체계담당), 기획재정부(보수담당)

□ 연구수행 절차



〈그림 1-2〉 연구수행 절차

□ 연구 진행경과

> **2013.3.25 :** 과제계약
>
> **2013.4. 9 :** 착수보고
>
> **2013.4.29 ~ 5.31 :** 관련기관 방문 및 실태조사
>
> **2013.5.10 :** 1차 중간보고
>
> **2013.5.13 ~6.7 :** 전문가 및 핵심관계자 대상 인터뷰
>
> **2013.6.13 :** 2차 중간보고
>
> **2013.6.24 :** 최종보고

Ⅱ. 육군 수당체계 현황 및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필요성

1 보수 법령체계

1.1 보수 법령체계[1)]

□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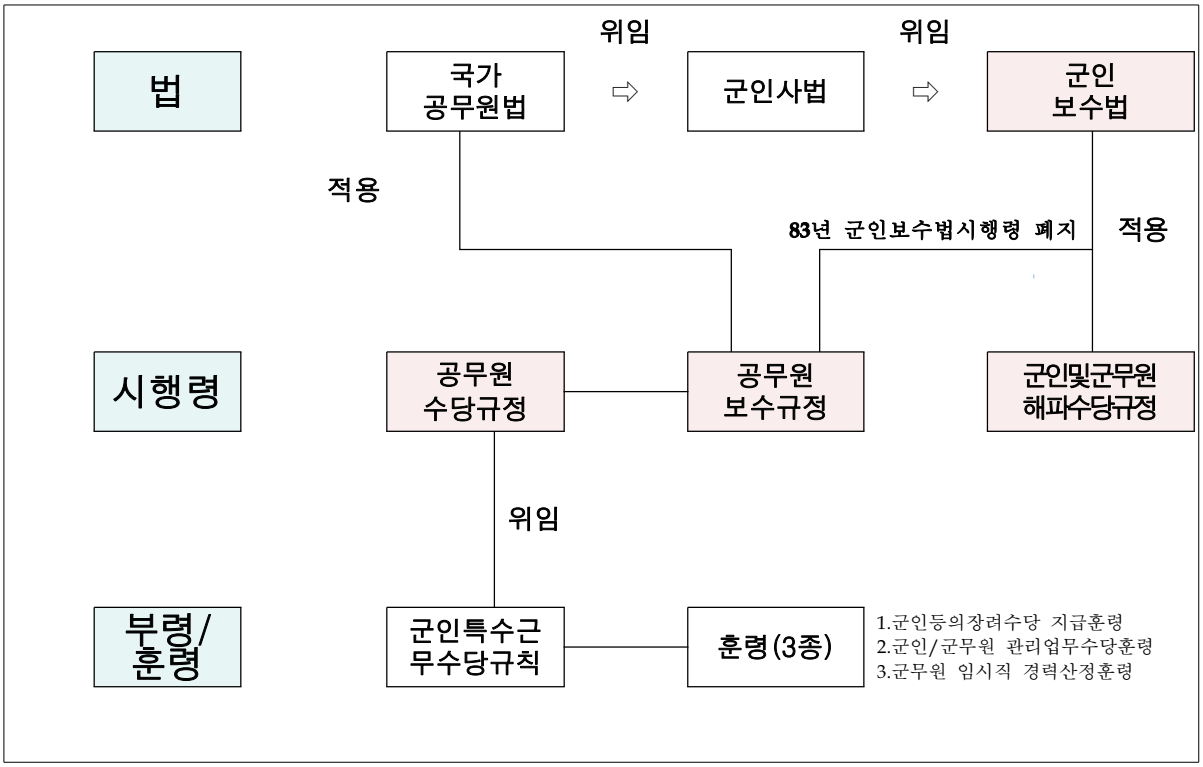
○ **보수체계는 법, 시행령, 부령 및 훈령으로 구성됨.**

- 법은 ① 국가공무원법 ② 군인사법 ③ 군인보수법을 각각 적용.
- 시행령은 ① 공무원수당규정 ② 공무원보수규정 ③ 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병 수당규정을 각각 적용.

※ 1983년 군인보수법 시행령 폐지 ⇨ 공무원보수 통폐합에 따라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의거 보수 지급

- 부령 및 훈령은 ① 군인특수근무수당규칙 ② 훈령(3종)[2)]을 각각 적용.

□ 보수 법령체계도



<그림 2-1>보수 법령체계도

1) 국방부, 「군인·군무원의 보수정책」(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 2011.10, pp. 151~156.
2) 3종의 훈령(군인등의 장려수당 지급훈령;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훈령; 군무원 임시직 경력산정 훈령) 임.

1.2 공무원보수제도[3)]

□ 공무원보수의 의의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재원은 국민의 납세에 의한 정부재정으로 민간부문과 달리 서비스나 재원의 생산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 서비스산업의 성격을 갖는 정부는 노동 집중적 생산체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1/4을 차지 할 만큼 정부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임.

○ 공무원 보수의 재원이 국민의 납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 통제가 이루어짐.

- 국민들은 정부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을 통해 공무원의 보수수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므로 공무원 보수의 경직도는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정부에 의한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은 대부분 시장적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결과인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민간 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공무원 보수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움.

- 공무원 간에도 직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근무조건이 상이하여 실적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공무원의 보수는 내외적으로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많음.

○ 민간부문은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어 임금수준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공무원 보수수준은 노동권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통해 이루어짐.[4)]

---

3) 안전행정부, 공무원보수제도 (http://pac.mospa.go.kr/salary/this.jsp), 2013. 5. 31 검색.

4)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1.3 공무원 보수체계

□ 보수 개념

○ 보수 = 봉급+수당(부가급여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

※ 기본급여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 정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 지급

○ 보수 혹은 임금 : 노동 및 업무수행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금전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재정적 보상을 의미하며,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됨.

○ 연금(퇴직연금 등) 및 의료보험, 주택지원, 금융공제, 유급휴가 등과 같은 간접적이거나 유예적인 재정적 보상은 복리후생 혹은 편익으로 보수와 구별됨.

○ 보수관련 용어 정의[5)]

(1) 보 수 : 봉급과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

(2) 봉 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3) 수 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봉급조정수당,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4) 복리후생비 :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

(5) 기타 급여 : 위 사항 이외의 기타급여

(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 위험수당, 항공수당, 함정수당, L.V.T수당, 군인장려수당 1-8호 등

5)국방부, 보수정책, http://www.mnd.mil.kr/mndPolicy/welfare/occupationMilitary/occupationMilitary_1/index.jsp?topMenuNo= 2&leftNum=24, 2013. 5. 31 검색.

□ 보수체계

○ 수당 (26종), 실비변상 (4종)

○ 국가공무원 수당체계표[6]

〈표2-1〉 국가공무원 수당체계표

구 분		수 당 명 / 세 부 내 용	
일반 수당 (26종)	상여 수당 (3종)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액의 4.1% 지급 ※ 대우군무원수당 : 4급이하 군무원에게 지급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50%, 연 2회 (1월, 7월)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월 5~13만원, 지급 추가 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 지급
	가계 보전 수당 (4종)	가족수당	배우자:월4만원, 기타부양가족:월2만원, 4명까지 셋째자녀부터 8만원 가산금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지급
		주택수당	하사이상 중령이하, 월 8만원 지급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국내 : 월 3~6만원, 국외 : 230~1800달러)
	특수 근무 수당 (14종)	위험근무수당	6개 부문 51개 위험직무종사자, 월 4~5만원 지급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1종
		업무대행수당	월 5만원 지급
		군법무관수당	월 봉급액의 40%, 이하
	초과 근무 수당 등 (4종)	시간외근무수당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규정된 일과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데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임
		야간근무수당	월 봉급액× 5/209
		휴일근무수당	월 봉급액× 15/26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실비 변상 등 (4종)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60%, 연 2회 지급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연2회
	직급보조비		월 9.5만원~75만원 지급

6) 행정안전부,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2013.2, pp.285～286.

2 군인 및 군무원 수당체계

2.1 수당체계 개요[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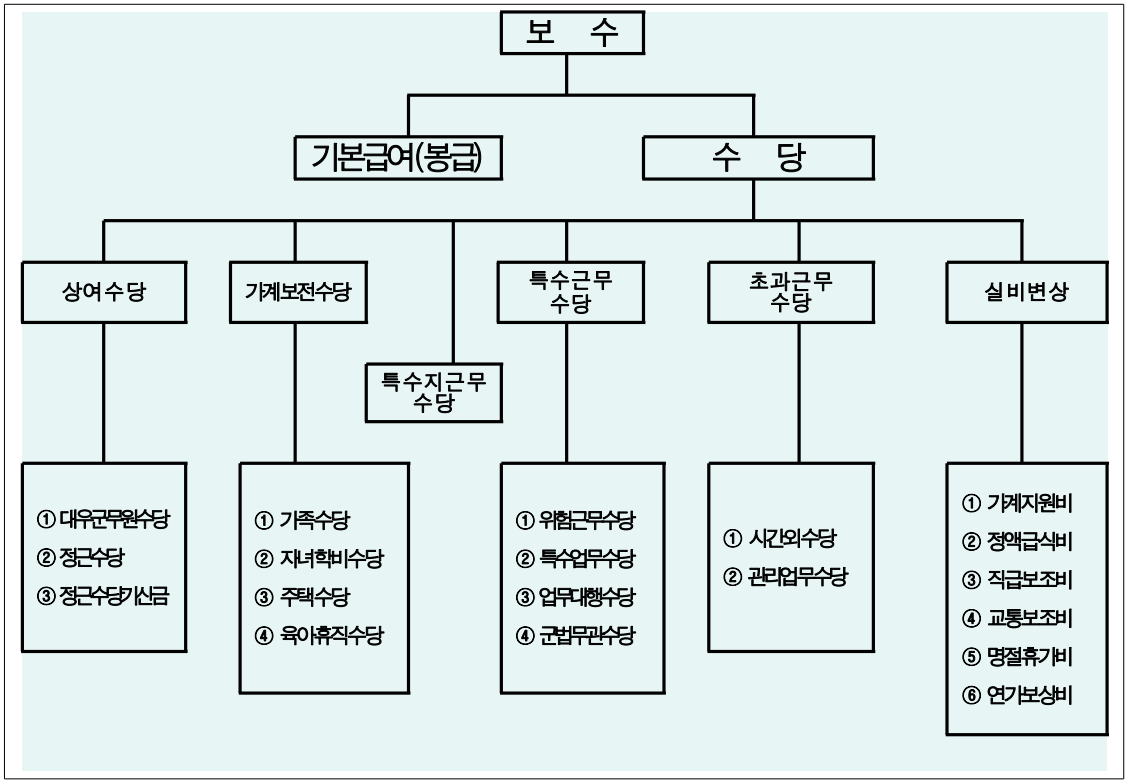
□ 보수체계 : 기본급여와 수당으로 분류

○ 기본급여 : 봉급

○ 수당의 분류 : 상여, 가계보전, 특수지, 초과근무, 실비 변상 등

- 상여수당 : 업적·공헌도를 감안하여 지급 (민간회사 보너스 개념)
- 가계보전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자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
- 특수지근무수당 : 근무여건의 열악성 및 원활한 인사배치를 위해 지급
- 특수근무수당 : 위험업무 수행자 보상 및 업무의 특수성, 인력확보 수단
- 초과근무수당 : 정규시간외 근무자의 초과근무 실적에 대한 금전적 보상
- 실비변상 : 보수규정의 투명성을 위해 ’01.1.1부 세출예산지침 규정에서 이관

□ 보수체계도



〈그림2-2〉 보수 체계도

7)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포털(http:// pac.mospa.go.kr) 제도 바로알기-공무원보수제도, 육군본부, 『'13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지시』,군인 및 군무원 보수체계(육군본부, 미발간 내부문서) 2013.2.

2.2 군인 보수정책의 변천과정[8]

□ 군인 보수정책 변천과정

〈표2-2〉 군인보수정책 변천과정

년 도	주 요 내 용	특 징
'45~47	• 월 봉급액의 25% 수당으로 지급	
48. 4. 1	• 계급별 단일 봉급제 적용 – 월 소위 1만원, 대장 3만원 지급	당시 백미 1가마(100ℓ)가 1만74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초급장교의 급여 수준은 쌀 한가마니에도 미치지 못함.
'50	• 인상율 : 150%	6.25전쟁과 전후 복구시기를 거치는 동안 악성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화폐가치의 급락과 세출·세입의 불균형, 2차에 걸친 통화개혁 등으로 봉급 정액이 13차례에 걸쳐 바뀌는 등 혼란가중
'52	• 인상율 : 200%	
'53	• 인상율 : 433%	
'62.3	• 계급별 단일 호봉제도를 개선한 계급별 호봉제 처음 시행 • 군인보수법 및 시행령 제정 안정된 급여체계로 전환 • 봉급일 조정 : 25일→10일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 지급
'64	• 가족수당 신설	
'65	• 군인보수법 시행령(재정공포) • 특수무기 장비수당(신설) • 군무원 특별수당(신설)	
'66	• 기술연구직 수당(신설) • 학군단훈련수당(신설) • 조교 수당(신설)	실질 생계비 보장에는 미흡
'72	• 군무원 기술장려비(신설) • 인상율 : 15%	적정 수준의 급여체계 보완
'74	• 군무원 특별수당 폐지 • 상여수당 (신설)	
'79	• 특수근무수당 통폐합	
'82	• 공무원 보수제도 통합 운영 방침 • 군인보수법 시행령 폐지	※ 소위 1호봉 기준 봉급 – 1990년 21만8400원 – 2000년 44만5600원, – 2010년 102만4000원 – 2013년 111만6700원
'83	• 주택수당 (신설)	
'87	• 가계보조비(신설)	
'88	• 효도휴가비(신설)	
'89	• 직무수당 및 체력단련비 (신설)	
'90	• 시간외, 연가보상비, 군의, 법무,항공전력 강화비 (신설)	
'91	• 소령이상 직책수당(신설)	
'92	• 직책수당 관리업무수당으로 개칭	

8) 국방부, 「군인·군무원의 보수정책」(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 2011.10, pp.136~142.; 조선일보, 군인보수정책 변천과정, 2011.11.19.; 안보경영연구원, 군인보수정책 변천과정 분석 및 수정, (안보경영연구원, 미발간 내부자료), 2013. 5. 31.

〈표2-2〉 군인보수정책 변천과정(~계속)

년 도	주 요 내 용	특 징
'95	• 특별 상여수당 (신설) 지급	
'96	• 교통비 (신설) 지급 • 이사화물상/하차비(신설)	
'97	• 가족/주택수당 규정 보완	봉급인상율 5%
'98	• 급여 동결	기말수당 삭감 120~240%
'99	• 급여 동결 • 체력단련비 폐지 • 가계지원비 (신설) 지급	기말수당 환원 120~240%
'00	• 기본급 3% 인상 • 봉급조정수당 (신설) 지급	
'01	• 기본급 5.5% 인상 • 정근수당 호봉 승급월(1,4,7,10)로 변경 • 성과상여금 47.5% 지급	
'02	• 기본급 8.5% 인상 • 육아휴직수당 (신설) 지급 : 월 20만원	
'03	• 기본급 5.5% 인상	급식비 8만원→9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수당 20만원→30만원으로 인상
'04	• 기본급 5.5% 인상	급식비 9만원→12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수당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
'05	• 봉급 2.4% 인상 • 군법무관 수당 (신설) 지급	
'06	• 봉급 2.4% 인상 • 분대장 지휘활동비 (신설) 지급	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100% 기본급 산입
'07	• 봉급 2.5% 인상	봉급 1.3%, 성과상여금 1.2%
'08	• 봉급 2.5% 인상	봉급 1.3%, 성과상여금 30%
'09	• 처우 동결 • 중령 직책별특정업무비 부서장 이상(신설)	
'10	• 처우 동결 • 병 기본효도 휴가비(신설)	장기군법무관 수당대상 확대 (장기지원자 40% 지급)
'11	• 봉급 6.41% 인상 • 장교후보생 교보재지원비 (신설)	
'12	• 봉급 4.31% 인상 • 중령 직책별특정업무비 단독직위 (신설) • 당직비 (신설) 지급	병 휴가비 20% 인상
'13	• 인상율 : 2.8%	– 향후 봉급과 각종 수당 지속적 인상 – 군 직무 특수성에 맞는 수당소요 개발

2.3 국방부 급여정책 방향[9]

□ 급여관련 국방부 추진 국정과제[10]

〈표2-3〉 급여관련 국방부 추진 국정과제

국 정 과 제	세 부 과 제	비 고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①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복지 획기적 증진	
	② 생산적 군 복무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	
	③ 장병 의식주 질적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④ 우수인력 획득 및 간부 위상 제고를 통한 복무의욕 고취	
	⑤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 급여정책

○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이후 중점 추진사항

① 상비전력 감축 및 군 정예화를 위한 간부 증원

② 병사 처우 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

③ 특수업무 수행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정책 추진

※ 대위 이상 장교 및 중사 이상 부사관 증원을 통한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비율 확대, 군의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병사 봉급 인상 등이 반영됨

□ 병사 봉급 인상 추진

○ '98년 상병 기준 15,700원, 참여정부 이후 대폭 인상, '2013년 117,000원으로 7배 인상 ⇨ 연평균 13.4%씩 인상한 것과 같은 금액으로 병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정도로 현실화 함

○ 향후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여 상병 기준 20만원 수준인 195,800원으로 인상할 계획

○ 병사 봉급 인상 계획 및 예산반영[11]

〈표2-4〉 병사 봉급 인상 계획 및 예산반영

구 분	'12	'13	'14	'15	'16	'17
단가(원)	97,500	117,000	134,600	154,800	178,000	195,800
인상률(%)	-	20	15	15	15	10
예산(억 원)	5,258	6,184	7,034	7,993	9,078	9,823

□ 수당 정책

○ 위험수당, 함정수당, 항공수당 등 군의 핵심 전투력 유지를 위한 임무 수행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중심으로 인상해 왔으며, 향후 지속적 정책추진

---

9) 유균혜, "국정과제와 중기 국방예산 정책방향", KIDA 주최 2013년 국방운영 세미나, 『국방운영 분야의 새 정부 국정철학 적용 방안 모색』 발표논문, 2013. 5. 28. pp.1~25.

10) 국방분야 국정과제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과제 33개, 타 부처 협조과제 10개를 합쳐 43개이며, 동 과제는 국방차관 주관으로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구성 '1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11) 유균혜, 전게서, p.10.

2.4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12)]

□ 목 적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음.

□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4300호, 2013.1.9.)

※ 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 이라 한다

□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국회의원・법관・헌법재판소재판소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및 검사를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1. 영에서 정한 수당 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영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당 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1.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3항) 상 "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 을 우선 고려하고
   ※ 공무원 처우 개선은 기본급과 공통수당 인상을 통하여 직종간 균형유지
2. 특수직종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3. 개별 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여부 및 인상 등의 필요성 등을 감안함

12) 안전행정부,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p.280~288.

3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논리 및 필요성

3.1 군인보수법 의의

□ 법률 및 규정

○ 군인보수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보수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일부 사항(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것, 그리고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군인보수법'임.

○ 통칙 규정인 동법은 개략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주로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항공·함정 수당 등 주로 군인에게 적용되는 수당과 관련 해서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동규칙에서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위험근무수당과 각종 특수업무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군인보수법과 공무원 보수 / 수당 규정과의 관계[13)]

<표2-5>군인보수법과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의 관계

구 분	군인보수법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적용범위	• 현역 / 소집복무 군인	• 전 공무원 (군인 포함) • 개별 공무원법에서 정하지 않는 보수관계 사항
보수구성	• 기본급여 : 봉급,가족/주택/피복수당 • 특별급여 : 특수근무수당, 전투근무수당, 상여금 등	• 봉급 (기본급여) • 수당
봉급표	• 봉급기준비율표에 의거	• 공무원 봉급표(군인포함)
보수결정	• 봉급기준조사위원회	•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

13) 곽용수 외, 핵심전투인력 적정 지급수준검토, 한국국방연구원, 2001, p.57.

3.2 현행 군인보수법 주요내용[14]

□ 현행 군인보수법의 주요내용은 보수의 구분과 수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시행 2013.3.22] [법률 제11634호, 2013.3.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1.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 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수 <개정 2008.1.17>

제6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병(兵)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3.22>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삭제 <2013.3.22> [전문개정 2008.1.17]

제13조(가족수당)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국방부, 군인보수법, http://www.mnd.mil.kr/mndInfo/lawInfo/existing/index.jsp?topMenuNo=3&leftNum=9, 2013. 5. 31 검색.

3.3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필요성

3.3.1 현실태 및 문제점

□ 법규 및 운영 측면

(1) 군인보수는 공무원과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인보수법과 공무원 보수 관계규정상의 일률적 적용으로 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15)

○ 공무원과 일률적 적용으로 군 독자적인 보수수준 및 체계결정의 제한

○ 군인보수법은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군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당 개선의 한계가 있음.

(2) 군인보수가 공무원 보수에 연동됨으로써 군 직업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준 및 체계결정 제한

○ 군인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식별해도 현행법 하에서는 조정 및 개선이 곤란함.

(3) 보수정책 및 운영상의 관점

○ 수당의 증·신설로 수당의 봉급화 등 편법적 보수인상을 도모해 왔으며, 이로 인해 보수체계 복잡 및 관리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 계급별, 신분별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논리 미흡, 계급별, 신분별 불평등 인식 상존

○ 공무원과 비교시 (동일직급) 형평성 차원에서 불이익 및 차별인식 증대

- 공무원은 지급되면서 군인은 미지급되는 수당16) 다수 : 예로서 야간 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이 있음.

○ 공무원 급여담당관 및 정책입안자는 군인이 당연히 받아야할 수당에 대하여 기본 임무수행으로 취급하여 급여정책에 미반영 사례가 발생

- 예로서 특수임무출동수당 등이 있음.

---

15)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은 일반공무원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군 조직에 대한 특수성을 상세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6) 육군본부,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육군본부 복지정책과 미발간 내부문서, 2013.2.

□ 불균형적인 보수체계 측면

(1) 기본급이 전체 보수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전체보수액의 46.5%[17] 수준)

○ 봉급이 수당보다 적어 보수의 대표기능 상실

○ 군인보수체계 : 새로운 수당의 신설로 봉급보다 수당의 비중이 큰형태 유지

(2) 봉급의 생계비 보전기능 미약

○ 현행 군인봉급은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군인 생계 : 일반 공무원 대비, 부대이동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추가비용 : 이주비용, 자녀 교육비, 격오지 생활로 인한 생필품비 상대적 증가

○ 잦은 부대이동 및 별거로 인한 추가 생활비(월 20~30만원) 부담 발생[18]

※ 12년 국회 국정감시 군인가족 별거수당 지급 제기 (통합민주당 백군기의원)

○ 군 간부의 50%는 의료, 문화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이하에서 근무하고 있음[19].

※ 읍·면 지역평균 국민 비율(20%), 국가직 공무원 비율(12.8%)에 비해 매우 높은 게 현실임

- 주거 여건은 일반 사회와 비교해 주택 보유율은 절반 수준임 (29%)[20].

○ 봉급인상 결정권 정부 소유로 군 실정에 맞는 보수인상 정책수립 한계[21]

- 군인의 보수인상이 상대적으로 수당에 의존하여 수당의 종류가 다양함.

---

17) 원천수, 군인보수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2002, p.57.

18) 국방부 국정감사시 군인이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말 가족, 이중 살림,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20~30만원의 생활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선진국의 경우 가족별거 수당 지급제도가 있어 미국은 매월 10만원, 영국은 17만원, 일본은 19만원의 별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관련근거 : 2012년 10.15 뉴시스(국방부 국감자료 분석 결과, 김형태의원)

19)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창의와 실용으로 만드는 군인복지기본계획』.2011.9.15. 지방닷컴(http://www.nlnc.co.kr).

20)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상게서.

21)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공무원보수체계 중 봉급제도http://pac.mospa.go.kr/salary/this.jsp;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2011.1.10.시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1.10.시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2011.1);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 지침(2010.3),

□ 군의 특수성이 미반영된 보수체계 측면

(1) 군 특수성이 결여된 임금수준 결정

○ 임금수준 결정요인 : 공용의 안정성, 직업의 쾌적도, 책임의 크기, 직업의 성공 가능성

○ 정부의 임금수준 결정시 반드시 군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군 직업의 특수성 : 높은 재해율, 격오지 근무율, 잦은 이사 / 별거에 의한 불안정한 생활[22)]

<표2-6>군 직업의 특수성

격오지 근무율	이사율	자가보유율
50%	영관장교 9회	29%

(2) 공무원보수규정의 제약을 받는 군인보수법[23)]
: 군인 별도의 보수조정 / 개선 곤란

○ 군인보수를 결정하는 군인보수법이 있으나, 보수구조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만 규정

○ 군인보수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하도록 규정

○ 군인보수는 공무원과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규정

(3) 기형적인 보수체계

○ 군의 보수체계는 법적으로 공무원 보수에 연동되도록 규정, 군 특성에 맞는 보수체계 발전이 곤란

○ 기본급에서 부족한 수준을 수당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수당신설로 기형적인 보수체계 유지

(4)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및 예하부대 건의사항 반영 제한[24)]

○ 일반공무원이 군인보다 더 받고 있는 수당이 있어서 형평성이 저해됨.

※ 일반공무원만 받고 있는 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부대별, 근무여건별 예하부대 건의사항이 육본에 건의되고 있으나, 자체 조사, 타당성 검토등을 통해 적시에 급여관련 의사결정기관(국방부, 안전행정부)에 설득력 있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음.

※ 설득논리 마련 및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영 필요

---

22) 국방부 인사복지실, 『창의와 실용으로 만드는 군인복지기본계획』.2011.9.15. 지방닷컴(http://www.nlnc.co.kr).

3.3.2 수당 논리 및 필요성

□ 위험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 필요

(1) 군의 특수성[25)]

○ 군인은 공무원을 비롯한 타 직종과는 달리 계약이 아닌 의무적 조항에 의해 복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전업할 수 없음.

○ 전시 현역 정년제도의 적용 및 지원연령의 제한, 단체교섭권 금지 등 다양한 신분상의 제한이 있음.

○ 복무여건 역시 타 직종과 비교할 때, 높은 직무수행 위험도, 빈번한 이동, 근무의 연속성, 직무의 무한책임성 등 타 직종과 차별성이 있으며, 직무여건상 열악한 정도가 심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1장 제4조에 "군인 보수는 복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적으로는 군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군인에 대한 신분 및 업무조건 등의 특수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은 논리적 법적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

(2) 군인 복무환경 분석[26)]

○ 근무여건

〈표2-7〉 근무여건

구 분	군인	공무원			사회
		국가직	지방직	전체	
면이하(격오지)	29.6%(5%)	5.8%	8.1%	6.6%	10.2%
군 읍	19.3%	7.0%	13.1%	9.0%	8.3%
중·소도시	33.2%	41.8%	40.0%	41.2%	34.4%
대도시	17.9%	45.4%	38.7%	43.2%	47.1%

* 자료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nd.mil.kr), 국방정책-장병복지증진-직업군인복지지원)

- 군인의 읍면 이하 지역 근무비율은 국민 평균 2.5배, 국가공무원의 5배, 거주비율도 국민 평균 3배임.

- 근본적으로 규칙적인 정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고, 상황대기와 장기 비상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직업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타남.

23) 군인보수법은 보수결정 3가지 기본원칙(사정적용의 원칙, 균형유지의 원칙, 보수결정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군인보수법(2000.12.6. 법률 제6290호) 과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음.
24) 육군본부,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육군본부 복지정책과. 2013.2.
25) 곽용수, 전게서, p.97.
26)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nd.mil.kr), 국방정책-장병복지증진-직업군인복지지원. 2013.5.22

○ 주거여건

- 일반사회와 비교하여 주택 보유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거주 주택의 수준이나 의료/편의/문화 시설의 부족함에 불만족하고 있음.
- 직업군인은 평균 65.5㎡(19.8평), 2.4개의 방이 딸린 주택에서 총 3.1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주택의 방 숫자나 면적도 저소득층과 비슷한 수준이고 자가 보유율은 사회의 절반 수준임.
- 군과 사회의 주거여건 비교

〈표2-8〉 군과 사회의 주거여건 비교

구분	자가보유율(%)	주택만족도(%)	거주지만족도(%)	방 수(실)	주택면적(평)
사회	62.90	70.08	68.88	2.58	84.5㎡(23.5평)
군	29.9	66.27	67.51	2.35	65.5㎡(19.8평)

* 자료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nd.mil.kr), 국방정책-장병복지증진-직업군인복지지원

○ 가정생활

- 다른 지역의 근무로 인한 별거나 자녀 학업문제 등을 해소할 인프라마련이 시급함.
- 직업군인은 1 ~ 2년 단위로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기혼 군인의 30.7%는 가족과 별거 중으로 사회통계 별거율(21.2%)의 약 1.5배가 됨.

○ 문화생활

- 군의 문화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고, 단조로우며, 문화/여가 시설의 이용도 사회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기타사항

○ 육군은 열악한 복무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등 처우개선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여론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음[27].

- 관련여론 "1" : 2012년 국회 국정감사시 백군기 의원(통합민주당)

※ 해외파병수당, 맞춤형복지제도, 출산축하금, 이사비용 등 처우 및 수당면에서 공무원과 형평성 제고 필요하며, 아울러 부사관 직급도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여론 "2" : 2012년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제기

※ 전산수당, 주택수당 등 장기간 동결된 수당 인상 필요

27) 국방부 복지정책과 참고자료 「군인보수관련 국회 국정감사 내용」 2013.5.20.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nd.mil.kr), 국방정책-장병복지증진-직업군인복지지원. 2013.2.18.

□ 우수자원 획득 및 유출방지를 위해 보상 필요

(1) 개 요

○ 일반공무원과 비교, 보상차원의 수당체계로 개선하여 우수한 자원 획득과 군의 우수자원이 타직종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당개선 논리임.

○ 군의 인력은 민간기업과는 다른 국가안보의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력 수급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우수한 인력확보는 군의 전투력 증강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우수자원 획득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보상이 필수적으로 수반 되어야함.

※ 상기 논리를 수용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당은 대우군인수당, 직책별특정업무수당, 부사관장려수당, 장려수당 1호(대포병탐지레이다), 3호(응급구조사), 4호(간호부사관) 등임

(2) 대우군인수당 신설

○ 군인도 공무원임으로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급되어야함.

○ 군무원은 지급하면서 군인에게만 미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군인 처우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사기진작 등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함

(3) 직책별 특정업무수당 인상

○ 일반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 전공무원과 7급까지 직책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군인의 경우 중령이상 지급하고 있음.

○ 소령이하도 직책을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군인의 경우 정년이 공무원보다 짧고, 진급 비선시 상당수가 생애 최대 지출시기(45~56세)에 전역

○ 장교의 경우 평균 2년 1개월마다 전출됨에 따라 잦은 이사, 자녀 학교 전학 등 가족들의 불편과 희생, 비용 지출이 수반됨.

○ 예산 편성지침의 차별적 적용으로 미수혜자의 사기저하 초래

○ 일반직 4급이상은 전원 지급되는 반면, 3급~4급에 해당되는 소령, 군무원(3~4급)들은 미지급으로 불만 초래

(4)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 군인장려수당 7호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필요

- 전방 : 20만원 지급
- 기타 : 15만원 지급

○ 우수한 부사관 획득 및 전문화된 부사관의 민간기업으로의 유출을 방지함.

(5) 장려수당 1호, 3호, 4호 확대

○ 장려수당 1호 확대 (대포병 탐지레이더 조작 및 운용요원)

-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특수장비중 군인장려수당(1호: 대상장비는 토우, 발칸, 전차, 자주포, 현무, 비호, 천마 등임)에 포함되지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반영 대상장비에 대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선하는 사항임.

  ※ 미반영 대상 : 대포병 탐지레이더 조작 및 운용요원

- 군인장려수당(1호)는 첨단장비 조작 및 운용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장비들을 고려시 대포병탐지레이더 조작 및 운용요원에게 지급 필요

○ 장려수당 3호 (응급구조사)[28] 확대

- 응급구조사에 대한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① 응급구조사 인력은 1급 6,070명, 2급 5,259명으로 향후 2010년까지 응급구조사가 약 18,000명정도(보건산업진흥원 추계)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함.

② 월 평균임금은 228만원, 하위 25%는 180만원, 상위 25%는 29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③ 대표적 근무직책 : 소방서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관리자 등

- 응급구조사들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불비한 대대급에 집중편제 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 의료행위를 함에도 수당 미반영됨.

- 의료기사[29]들과 동등한 학력수준을 거쳐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기사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장려수당 4호 (간호부사관) 확대

- 간호업무를 직접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군인장려수당 4호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간호장교 에게 월 5만원의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사관들 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수당임.

---

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응급의료에관한 법률시행규칙 2013.2.28.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www.q-net.or.kr), 응급구조사 : ①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심박 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등의 업무수행,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약물투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1급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과를 졸업한 자나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응시할 수 있으며, 2급 응시자격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서울시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 국군군의학교)에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 해당됨.

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2012.5.23: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①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의료기사는 면허증을 취득하는 국가자격시험이며, 응급구조사는 순수한 국가자격시험임" ③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공무원과 비교시 미지급 및 장기동결 수당 발생으로 형평성 유지 필요[30]

(1) 개 요

○ 일반공무원과 비교시 군인도 공무원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공무원에게는 지급하는 반면, 군인에게는 미지급되는 수당으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는 수당개선 논리임.

○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함에도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미지급됨에 따라 사기저하 및 전투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 상기 논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심도 깊게 이의 제기된 내용임.

(2) 미지급 수당 개선

① 휴일 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 ③ 대우군인수당

(3) 축소 지급수당 개선

① 직책별 특정업무비 ② 당직근무비

(4) 장기동결 수당 개선

① 해외파견수당 ② 부사관 장려수당 ③ 주택수당 ④ 교통보조비

30) 공무원 대비 군인만 지급받고 있는 수당으로 일반공무원이 형평성 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교통보조비, 주택수당, 가계지원비 등이 있음

4 소결론

4.1 분석 결과/ 당면과제[31)]

□ 수당의 신설 및 인상은 안전행정부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92호)에 의거 엄격하게 통제되어 일시에 대폭적인 개선 한계

○ 수당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

- 직무의 성격, 내용, 근무여건 등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 고려 판단

○ 수당 인상은 형평성, 장기간 동결여부 등을 고려 판단

- 특정 직종에 대해 매년 연속적 인상은 억제

- 유사분야와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 할 경우 불인정

□ 공무원 수당과 비교시 미흡 또는 미지급되는 수당 다수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사기 저하 요인

○ 중기계획 반영 평균 10건 내외, 미반영 평균 40건 수준

○ 공무원 대비 미흡 / 미지급 수당(경비)

〈표2-9〉 공무원과 군인의 미흡/미지급 수당 비교

구 분		공 무 원	군 인
미흡 수당 (경비)	당직근무비	부처별 예산범위내 1~3만원 / 1일	대대급이하 5천원 / 1일
	직책별특정업무비	4급이상 15~50만원 7급이상 부서장 5~15만원	중령 5~15만원
	맞춤형복지예산	타부처 평균 1인당 58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	1인당 44.3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13.1.1부)
미지급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의 4.1%	-
	야간근무수당	2~4천원 / 1시간	-
	휴일근무수당	5~10만원 / 1일	-

□ 공무원과 연동하여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는 군 복무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음.

○ 군 특수성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인상 필요

31) 안보경영연구원, 관련기관 현장방문 인터뷰(2013.4.22~5.3) 종합분석 결과, 2013. 5.10.; 국방부 「군인 수당 현실화 방안」 2012.11.6., pp.1~3.

4.2 개선방안

□ 개선방향

○ 수당의 신설 및 인상은 안전행정부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92호)에 의거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으며,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제한됨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 해야함.

○ 수당의 신설 및 인상 우선순위 (안)

① 공무원 대비 미흡 및 미지급 수당 인상 및 신설
*** 대우공무원수당, 야간/휴일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② 장기동결 수당 인상
*** 주택수당,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③ 군 특수성을 고려 위험 또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상
***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 공무원과 공통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공무원 수당 인상과 연계하여 추진

○ 국방 중기계획에 세부 인상계획 반영 후 연도별 인상 추진

□ 수당 개선방안 : 3장 수당 개선방안에서 세부시행(안) 제시

〈표2-10〉 수당 개선방안

구 분	대상 수당 항목
미지급 및 축소지급 수당 (4개)	① 휴일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 ③ 당직근무비 ④ 직책별특정업무비
장기동결 수당 (4개)	① 해외파견근무수당 ② 부사관장려수당 ③주택수당 ④ 교통보조비
신설 및 확대 수당 **ㅇ 신설(4개)** **ㅇ 확대(6개)**	① 대우군인수당 ② 특수임무출동수당 ③ 군인가족별거지원수당 ④ 가족이전정착지원금 ⑤ 항공수당 ⑥ 위험근무수당 ⑦ 장려수당 1호 ⑧ 장려수당 3호 ⑨ 장려수당 4호 ⑩ 특수지근무수당

Ⅲ. 군 특수성 및 일반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당 개선방안

1 기본개념

1.1 군인 보수의 특징[32]을 환경으로 함.

□ **보수결정의 경직성**

군인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 제40조에 의거, 매년 예산편성 전에 봉급기준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봉급액의 산출기준을 조사 설정하고, 그 소요예산에 대하여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민간기업과 같이 경제변동이나 인플레에 적절히 연동하여 보수수준을 조정할 수가 없음.

□ **보수결정의 일방성**

공무원 보수와 연동되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조직 특성상 군인은 민간기업과 같이 노조를 결성할 수 없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활동도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수준 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보수비교의 난이성**

군인이란 직업은 민간직종과 비교할 때, 업무수행형태, 업무성격, 업무환경 등 근무조건이 판이하게 달라 민간직종과의 1 대 1 대응적인 보수수준 비교가 불가능하다. 민간기업들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군인의 경우는 계급 상승과 함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능력이 함양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연공급제 중심의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군인의 특수성 반영에 있어서 제한성**

군 인사법에 의해 군인보수법을 시행하여야 하나,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으로 군인의 특수성 반영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32)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포털(http:// pac.mospa.go.kr) 제도 바로알기-공무원보수제도-공무원보수체계현황.2013.4.; 육군본부, 『2013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지시』“군인 및 군무원 보수체계” 2013.2.; 안보경영연구원, 수당관계자 현장 인터뷰(2013.4.22.~25) 결과, 2013. 5. 10.; 육군본부, 『'14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2013.2.

1.2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사항[33] 반영을 원칙으로 함.

○ 평시에도 전쟁을 준비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을 가진 군인에게 명예심과 더불어 그에 맞는 보상으로 존경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잦은 이사와 별거, 격오지 근무, 자녀 교육문제, 부정량 근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 하여 현실성 있는 수당체계 개선이 요구됨.

○ 일반공무원과 비교, 보상차원의 수당체계로 개선하여 우수한 자원 획득과 군의 우수자원이 타직종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함.

○ 군인은 공무원을 비롯한 타 직종과는 달리 계약이 아닌 의무적 조항에 의해 복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전업할 수 없음.

○ 전시 현역 정년제도의 적용 및 지원연령의 제한, 단체교섭권 금지 등 다양한 신분상의 제한이 있음.

○ 복무여건 역시 타 직종과 비교할 때, 높은 직무수행 위험도, 빈번한 이동, 근무의 연속성, 직무의 무한책임성 등 타 직종과 차별성이 있으며, 직무여건상 열악한 정도가 심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1장 제4조에 “군인 보수는 복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적으로는 군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군인에 대한 신분 및 업무조건 등의 특수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은 논리적 법적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

1.3 수당개선은 안전행정부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92호)에 따라 개선

○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거 수당개선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음으로 군인 수당을 대폭적으로 전면 개선하기는 어려운 환경임.

33) 본 보고서의 현실태 분석 및 당면과제에서 기 제시한 내용임.

2 군인 / 일반공무원 / 경찰 수당 비교

1.1 군인 / 일반공무원 / 경찰 수당비교【동일항목 비교 형평성 차이 여부 분석】

□ 군인 / 일반공무원 / 경찰 수당비교 분석[34)]

비교 항목	일반공무원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1)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 월 봉급액의 4.1% ○4급부터 9급까지 지급 ○직급별 월 60,260~175,820지급	▸군인 : 미지급 ▸군무원:대우군무원수당 지급 ○4급이하 군무원에게 지급 ○월 봉급액의 4.1%	▸월 봉급액의 4.1% 지급 ▸2009년 1월1일부터 경위(6급을)이하(계급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을 지급함
(2) 정근수당	▸지급 : 월 봉급액의 0~50%, 연2회 (1월,7월 지급)	좌 동	좌 동
(3)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 월 5~13만원, 추가가산금포함	좌 동	▸지급 : 월 5~13만원, 추가가산금포함
(4) 성과상여금	▸평균 지급액 130%	좌 동	▸지급기준액(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 봉급액임. 치안정감~총경:20호봉, 경정~경감:18호봉, 경위:17호봉, 경사:15호봉, 경장:12호봉, 순경:10호봉)의0~230% 연 1회이상
(5) 가족수당	▸지급 : 배우자 월 4만원, 기타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셋째자녀부터 3만원 가산금 지급	좌 동	좌 동
(6) 자녀학비보조수당	▸중고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좌 동	좌 동
(7) 주택수당	▸미지급	▸군인 : 하사이상 중령이하,8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에 산입 지급
(8) 육아휴직수당	▸지급 : 월 봉급액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좌 동	▸지급 : 월 봉급액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9) 특수지근무수당	▸국내 : 월 3~9만원, 국외 : 230~1800달러 ▸도서,벽지,접적지,특수기관 근무자	좌 동	▸도서,벽지,접적지 근무자 (월 3~6만원)
(10) 위험근무수당	▸월 4~5만원 지급 (6개부문 45개 위험직무종사자)	▸군인 : 갑·을·병 1만8천~40만3천원/ 군무원 : 갑(5만원), 을(4만원)	▸3개부문 10개 위험직무종사자, 갑종 월 5만원, 을종 월 4만원 지급

<표3-1> 군인과 일반공무원 / 경찰의 수당 비교

34) 국방부, 『군인,군무원 보수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11.10.18.; "군인 및 군무원 보수체계" 2013.2;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포털(http:// pac.mospa.go.kr) 제도 바로알기-공무원보수제도-공무원보수체계현황.2013.4; 육군본부, 『13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지시』"군인 및 군무원 보수체계" 2013.2.:김종립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pp79: 경찰청 급여담당관 인터뷰 결과(2013.6.24.)

비교 항목	일반공무원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11) 특수근무수당 (13종)	▸종별 지급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	▸군인/군무원 지급: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군인등의 장려수당, 의료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계호보호업무수당,사서수당,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 군법무관수당(월 봉급액의 40%이하	▸특수업무수당 4개분야 7종(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의료업무등의 수당, 특수직무수당, 재외근무수당)
(12) 시간외근무수당	▸기본 호봉 봉급액 × 59% × 1/226× (100~150%) × 시간외근무시간(h)	▸군인 : 대위 이하 ▸군무원 :5급 이하 군무원	▸기본 호봉 봉급액 (해당계급상당10호봉)× 59% × 1/226× (100~150%) × 시간외근무시간(h)
(13) 업무대행수당	▸월 5만원 지급	좌 동	좌 동
(14) 야간근무수당	▸지급 (월봉급액 × 5/209) ▸1시간 2~4천원 지급	▸군인 : 미지급	▸기본 호봉 봉급액 (해당계급상당10호봉)× 59% × 1/226× 50% × 야간근무시간(h)
(15) 휴일근무수당	▸기본 호봉 봉급액 × 1/30× 150% × 휴일 근무일수(D) ▸1일 5~10만원 지급	▸군인 : 미지급	▸기본 호봉 봉급액 (해당계급상당 10호봉) × 1/30× 150% × 휴일 근무일수(D)
(16) 관리업무수당	▸지급(4급이상 공무원 대상) ▸월 봉급액의 9%	▸지급 : 소령이상 군인 / 4급이상 군무원 ▸월 봉급액의 9%	▸지급 : 총경이상 공무원 대상, 월 봉급액의 9% ▸관리업무수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제한
(17) 직급보조비	▸월 7~75만원 지급	▸하사이상 군인/군무원 : 월 9만5천~165만원 지급	▸월 9.5만원~75만원 지급
(18)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지급	좌 동	좌 동
(19) 연가보상비	▸1급이하(연가보상일수 20일내)	▸하사이상 소장이하 군인/군무원(연가보상일수 20일내)	▸1급이하,(연가보상일수 20일이내)
(20) 교통보조비	▸2011년부터 기본급에 포함 지급하고 있음	▸월 12~20만원(군인만 지급)	▸2011년부터 기본급에 포함 지급하고 있음
(21) 가계지원비	▸미지급	▸월 봉급액의 16.7%(군인만 지급)	▸미지급
(22) 해외파견근무수당	▸직급별 지급	▸아래 내용 충족시만 군인에게 지급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될 것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할것	▸직급별 지급
(23)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60%, 연 2회	좌 동	좌 동

□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35)]

※ 비교 기준 : '2013년 동일 직급 일반공무원, 기능직, 군인, 경찰, 소방, 군무원

〈표3-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기능 1~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10급
군 인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소 방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경 찰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35)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2013.3.23.; 행정안전부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3.2 pp.82~87:

□ 일반공무원·경찰·군인 보수수준 비교표[36] (월 기준)

※ 비교 기준 : '2013년 급여표, 4급 18년 근속 기준 적용 (유사직급/근속연수/호봉고려)

<표3-3>일반공무원·경찰·군인 보수수준 비교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무원 (4급:서기관) 14호봉	경찰 (총경) 16호봉	군인 (소령) 13호봉	비 고 (4급,18년 근속기준)
(1) 봉급(기본급)		3,556,200	3,819,000	3,153,800	'13년 1월 1일 기준
수당	(2) 정근수당가산금	60,000	60,000	60,000	근속기간 10년이상 적용(4급 기준)
	(3) 대우공무원수당	145,804	156,579	미지급 (규정없음)	기본급의 4.1% 총경:12.1.1부 지급
	(4) 성과상여금	3,834,400	3,940,020	3,834,400	13년 안행부 지급기준액 월급여 미포함/년1회지급
	(5) 주택수당	기본급산입(12년)	기본급산입(12년)	80,000	군인만 지급
	(6) 위험근무수당	40,000(을종)	40,000(을종)	40,000(을종)	
	(7) 특정업무수당활동비	100,000	미지급 (규정없음)	미지급 (규정없음)	
	(8) 특정업무경비	미지급 (규정없음)	170,000	미지급 (규정없음)	경찰:치안활동비
	(9) 업무대행수당	50,000	50,000	50,000	
	(10) 관리업무수당	320,058	343,710	283,842	기본급의 9% 지급
	(11)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12) 직급보조비	400,000	400,000	400,000	
	(13) 교통보조비	140,000	140,000	140,000	
	(14) 연가보상비	1급이하 보상일수20일이내	좌동	좌 동	년 1회 지급
	(15) 가족수당	80,000	80,000	80,000	부양가족 3인 기준적용
	(16) 시간외근무수당	기본 호봉 봉급액 × 59% × 1/226× (100~150%) × 시간외근무시간(h)			비교제외(근무명령자)
	(17) 야간근무수당	1시간2~4천원	1시간2~4천원	미지급	비교제외(근무명령자)
	(18) 휴일근무수당	1일 5~10만원	1일 5~10만원	미지급	비교제외(근무명령자)
	(19) 특수지근무수당	60,000	60,000	60,000	도서,벽지,접적근무자
	(20) 정근수당	월 봉급액 0~50%	좌동	좌동	연 2회 지급
	(21) 자녀학비보조수당	분기별 지급	좌동	좌동	공납금 납입고지서 전액
	(22)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40%	좌동	좌동	상한100만원~하한50만원
	(23)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 60%	좌동	좌동	연 2회 지급(설,추석)
	(24) 가계지원비	미지급	미지급	526,684	월봉급액16.7%(매월지급)
합 계	급여합계	5,082,062	5,449,289	5,004,326	
	세액공제	605,400	668,230	591,570	국세청 월 세액공제 적용
	실수령액	4,476,660 (+63,910)	4,781,050 (+368,300)	4,412,750 (0 기준)	

36) 안전행정부 공무원급여포탈 및 공무원보수/수당지급규정

□ 경찰공무원 수당 지급 현황[37] (월 지급 기준)

※ 아래 경찰공무원의 월 지급 수당 현황 제시 사유는 ① 경찰공무원이 군인과 유사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② 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당 지급으로 수당비교는 곤란하나, 군인의 수당 지급 실태 파악이 용이함

<표3-4>경찰공무원 수당 지급 현황

구 분	지급액수	비 고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 직급 기준에 의거 지급	군인의 각 계급에 따른 지급과 유사
위험수당	40,000원	
치안활동비	170,000원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 추가 수당 지급
대우공무원 수당	132,890원	경위계급 5년 이상 경감 대우
1일 자원 근무지원비	경위 104,850~168,390원 순경 82,390~132,310원	교대근무자가 부득이 비번 근무일에 근무시 주간/휴일/야간 등으로 구분하여 근무일수 만큼 추가수당 지급
일반 내근 근무자 수당	경위 638,644원 순경 501,830원	교대근무자가 아닌 인원에게는 근무지원비 성격으로 추가 수당 지급
대민봉사지원비	월 200,000원	방범, 순찰 등 근무 경찰관 한정 지원

□ 시사점

○ 기본적인 봉급 비교시 (동일 직급/호봉) : 가장 낮은 보수를 받고 있음

※ 4급 18년 근속기준 기준 비교시 현격한 차이 : 최하 7만원 ~ 최고 37만원 격차

<표3-5> 월급여 비교(4급 18년근속기준 : 일반공무원, 경찰, 군인)

구	일반공무원	경찰	군인	비 고
지급금액	448만원	478만원	441만원	2013년 봉급기준(월)

○ 호봉수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보수차이 발생

○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 및 생명을 담보한 임무수행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급 비교시 낮은 군인의 봉급은 경찰 및 일반공무원과 비교시 형평성에 저해되고 있음.

37) 자료출처 : 경찰 내부자료 일부 발췌, 2013.6월; 안보경영연구원, 경찰 수당지급 실태 인터뷰 및 획득자료, 2013.6.

1.2 수당 분석결과 주요내용 38)

<표3-6>수당 분석결과 주요내용

구 분	세부항목	주 요 내 용
미지급/ 축소지급 수당 (4개)	① 야간근무수당	○공무원은 지급하고 있으나 군인은 미지급하고 있는 수당임
	② 휴일근무수당	○공무원은 지급하고 있으나 군인은 미지급하고 있는 수당임
	③ 당직근무비	○현재 대대급이하 당직근무자에게만 지급 ○당직근무자 전 인원에게 지급 형평성 제고 및 불만 해소 ○공무원은 3만원 지급, 군인은 5천원~1만원 지급
	④ 직책별특정업무비	○군인의 경우 소령이하는 미지급 ○군무원은 3급이하 미지급
장기동결 수당 (4개)	⑤ 해외파견근무수당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해야함 (공무원:12년 47%인상) ○12년 국정감사시 백군기의원(민주통합당) 제기 ○10년째 동결된 수당임
	⑥ 부사관장려수당 (장려수당 7호)	○7년간(1997~2013년) 장기 동결된 수당임 ○형평성 확보 / 우수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 유도
	⑦ 주택수당	○95년 이후 현재까지 8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임 ○주택수당 현실화 반영이 필요한 수당임 ○12년 국정감사시 한기호의원(새누리당) 제기
	⑧ 교통보조비	○2011년부터 일반직공무원 및 군무원은 기본급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군인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3년간 동결된 수당임
신설 및 확대 지급 수당 (10개)	⑨ 대우군인수당	○일반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함 ○우수인력(초급간부) 획득 및 우수인력 사회 유출 방지
	⑩ 특수임무 출동수당	○야외훈련의 위험성, 야외숙식에 따른 육체적 고통 및 기혼간부의 가정생활 유지 어려운 등의 실비 보상차원
	⑪ 군인가족별거지원수당	○12년 국정감사시 백군기의원(민주통합당) 제기 ○군복무(GOP,강안, 해안, 격오지등) 특성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별거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복무의욕 제고 및 사기 증진
	⑫ 가족이전정착지원금	○잦은 이사로 인하여 새로운 임지에 정착하는데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를 보상하여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과 사기를 도모하는 것임.
	⑬ 항공수당	○임무의 중요성 및 위험성고려 인상 필요
	⑭ 위험근무수당	○임무의 중요성 및 위험성고려 인상 필요 ○국회 국정감사시(2009년) 심대평의원 제기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 유도,
	⑮ 장려수당 1호 (대포병탐지레이더)	○특수장비중 군인장려수당(1호)에 포함되지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수당임 ○형평성 확보 / 우수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 유도
	⑯ 장려수당 3호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에 대한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임 ○형평성 확보 / 우수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 유도
	⑰ 장려수당 4호 (간호부사관)	○간호장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부사관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수당임. ○형평성 확보 / 우수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 유도
	⑱ 특수지근무수당	○GP/GOP, 격오지 근무 장병들에게 수당이 과소 책정됨 ○군인의 경우 국외 미지급

38) 국방부, 『군인,군무원 보수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11.10.18.; "군인 및 군무원 보수체계" 2013.2;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포털(http:// pac.mospa.go.kr) 제도 바로알기-공무원보수제도-공무원보수체계현황.2013.4; 육군본부, 『'13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지시』 "군인 및 군무원 보수체계" 2013.2.

3 미지급 및 축소지급 수당

3.1 야간근무수당[39]

□ 목적 및 필요성

○ 야간근무수당은「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군인은 미지급하고 있는 수당임

□ 현실태 / 문제점

○ 군인 수당 개선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수당임

○ 공무원에게 1시간에 2~4천원 지급[40]

○ 지급규정 : 봉급기준액 × 1/209 × 0.5

○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급되어야할 수당임

□ 개선방안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확보)

○ 공무원수당지급 규정상 야간근무수당 적용 개념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야간이란, 당일 22시에서 익일 06시 까지를 말한다.

○ 지급대상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39) 안전행정부『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3. 2 p343~344

40) 국방부『군인수당 현실화 방안』2012. 11.6 p1 【참고 2】공무원대비 미흡/미지급 수당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공무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① 공무원과 동일하게 계급별 지정금액 지급 (대위이하)[41]

② 지급금액 / 산출방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적용

>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1.9〉
>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 2.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 [전문개정 2008.12.31]
> [제목개정 2013.1.9]

○ 지급금액 : 1시간 2~4천원 지급

○ 산출방법 : 「봉급 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계산

③ 대상자 선정 : 편제표상 대위이하 현직 야간근무가능자로 한정

41) 국방부『군인수당 현실화 방안』,수당 개선안, 2012. 11.6, pp.2~3.

3.2 휴일근무수당[42]

□ 목적 및 필요성

○ 휴일근무수당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상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공무원은 지급하고 있으나 군인은 미지급하고 있는 수당임.

○ 지급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 1/26 × 1.5」

□ 현실태 / 문제점

○ 공무원은 【기본 호봉 봉급액 × 1/26× 1.5 × 휴일근무일수(D)】를 지급하고 있으나, 군인은 미지급하고 있음.

○ 공무원은 1일 5~10만원 지급[43]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 공무원과 동일한 지급 조건 : 계급별 지정금액을 지급 해야함.

※ 공무원과 동일 지급 계급 : 대위이하 해당

○ 예산을 고려 야간근무수당 우선 적용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급되어야할 수당임.

□ 개선방안 (원칙 :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확보)

○ 공무원수당지급 규정상 휴일근무수당 적용 개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상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지급대상 :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42) 안전행정부,『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3. 2, pp.343～344.
43) 국방부『군인수당 현실화 방안』2012. 11.6 p1 【참고 2】공무원대비 미흡/미지급 수당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 1/26 × 1.5」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 ~ 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① 공무원과 동일하게 계급별 지정금액 지급 (대위이하)[44]

② 지급금액 / 산출방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 적용

>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2〉
>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2.8.22]

○ 지급금액 : 1일 5~10만원 지급

○ 산출방법 : 휴일 및 토요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 1/26 × 1.5」로 계산

③ 대상자 선정 : 편제표상 대위이하 현직 휴일근무가능자로 한정

44) 국방부, 『군인수당 현실화 방안』2012. 11.6 pp2~3, "수당 개선안"

3.3 당직근무비

□ 목적 및 필요성

○ 군 당직근무자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고, 당직근무간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상하기 위해 당직근무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실제 지급 대상은 전인원이 아닌 대대급 당직근무자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형평성 대두 및 불만 요인 발생

○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직근무를 하며, 일반직공무원들과 상대적 대우를 받는 간부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군생활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최소한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임.

□ 현실태 및 문제점

○ 당직근무 규정

: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국방부 예규 제526호('13.3.8)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국방부 비상통제관과 당직총사령(이하 "비상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되 1명이 겸직한다.
② 비상통제관 당직은 국방부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상황실포함),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와 육·해·공군(이하 각군)의 당직근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차관 관장하에 두며, 비상통제관보좌관 · 당직총사령보좌관(이하 "당직보좌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당직근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 관장하에 둔다
③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근무시간) 당직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3. 일·숙직 통합근무자의 휴일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다음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12년 당직근무비가 최초 예산 편성되었지만, 당직근무 전인원이 아닌 대대급 이하 당직근무자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형평성 대두 및 불만 요인 발생

○ 당직근무 간 취침이 불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직근무비 비교 현황[45]

〈표3-7〉당직근무비 공무원/군인 비교 현황

구 분	공무원	군 인
지 급 내 용	부처별 예산범위내 1일, 1~3만원 지급	대대급이하 - 평일 5천원 지급 - 휴일 1만원 지급

○ 정부기관 일·숙직비 지급 현황[46]

〈표3-8〉정부기관 일·숙직비 지급 현황

구 분	지 급 금 액	비 고
(1)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2만원~7만원 지급 •전북 시·구청공무원 5만원, •울산구청공무원 5만원, 최고 8만원 •기타 시공무원 : 4~5만원 지급	일·숙직비
(2) 경찰청, 해양경찰청	○ 3만원 지급	평·휴일숙직비
(3) 국방부 공무원 및 근무현역	○ 2만원 지급	평·휴일 일·숙직비

○ 유사직종(경찰, 소방공무원) 일·숙직비 지급 현황[47]

〈표3-9〉유사직종(경찰, 소방공무원) 일·숙직비 지급 현황

구 분	지 급 금 액	비 고
(1) 경 찰	• 평일 : 30,000원 • 휴일 : 60,000원	• 평일 근무 후 익일 4시간 휴식 • 휴일 근무 후 익일 휴식
(2) 소 방	• 평일 : 60,000원 • 휴일 주/야간 : 각 60,000원	• 익일 휴식

○ 당직근무 시간이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당직근무간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도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임.

○ 당직근무간 취침이 불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48]을 하고 있음.

○ 당직근무시 국가적 재해/재난 대비 임무수행 병행

45) 국방부,『군인수당 현실화 방안』, 참고2 공무원대비 미흡/미지급 수당, 2012. 11.6., p.1.; 안보경영연구원, 안전행정부 수당담당과 현장방문/인터뷰 결과, 2013.5.13.~16.

46) 국민일보 쿠키뉴스(http://www.kwkinews.com): 다음 블러그 (http://blog.daum.net) 『공무원 당직수당 천차만별: ,육군본부 인참부 업무참고자료 2013.6.11.

47) 상게서.

48) 임무수행 내용은 ① 일과후 전투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역할 수행(출동대기), ② 작전활동(경계작전, 수색/매복작전, 야간훈련 등) 통제, ③ 야간/휴일 병력통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부단한 순찰 활동, ④ 당직근무시 국가적 재해/재난 대비 임무수행 병행임.

□ 개선방안 (공무원/제대별 형평성 확보)

① 공무원과 동일하게 계급별 지정금액 지급 / 현행 대대급이하에서 연대급 이상으로 확대

○ 연대급이상 확대 이유 : 일반공무원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사기진작 및 연대급이상 부대의 당직근무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 차원 지급

② 세부 개선내용

<표3-10>당직근무비 세부개선 내용

구 분	주요 개선내용	비 고
지급대상	○ 연대급이상 당직근무자 전원(기존 대대급이하에 추가)	대상 확대
지급시간	○1일 야간(일과후~익일08:00), 휴일(08:00~익일 08:00)	
지급금액	○1일 평일 5,000원, 휴일 10,000원	현행 시행중
지급방법	○일일단위 근무명령서에 의거 지급	

* 최소 경비 산출근거[49)]

<표3-11>당직근무비 산출근거

구 분	당직근무자 야식비	야간근무후 목욕/교통비	계
소요비용 산출(1일기준)	6,000원	4,000원	10,000원

③ 지급금액 / 산출방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49) 안보경영연구원, 국내 평균값을 고려한 물가 등 자체 자료수집 분석결과, 2013.4.22.

3.4 직책별특정업무비

□ 목적 및 필요성

○ 직책별특정업무비는 조직관계법 또는 편제에 의한 직위에 지휘관 및 참모직위에 보직된 중령 및 3급 군무원이 그 조직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의 인원에 따라 매월 정책으로 지급하는 월정금액임.

○ 일반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 전공무원과 7급까지 직책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군인의 경우 중령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있음.

○ 소령이하도 직책을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현실태 및 문제점

○ 예산 편성지침의 차별적 적용으로 미수혜자의 사기저하 초래

○ 일반직 4급이상은 전원 지급되는 반면, 3급~4급에 해당되는 소령, 군무원(3~4급)들은 미지급으로 불만 초래

※ 현행 지급 규정 : 대령은 월 60~65만원 지급, 중령은 5만원~15만원 지급

○ 일반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 전공무원과 7급까지 직책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군인의 경우 대령 및 2인이상 부서장에게만 지급하고 있음.

○ 소령이하도 직책을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군인의 경우 정년이 공무원보다 짧고, 진급 비선시 상당수가 생애 최대 지출 시기(45~56세)에 전역

○ 장교의 경우 평균 2년 1개월마다 전출됨에 따라 잦은 이사, 자녀 학교 전학 등 가족들의 불편과 희생, 비용 지출이 수반됨.

○ 예산 편성지침의 차별적 적용으로 미수혜자의 사기저하 초래

- 일반직 4급이상은 전원 지급되는 반면, 군무원(3~4급)들은 미지급으로 불만 초래

〈표3-12〉 직책별특정업무비 지급현황

<table>
<tr><td rowspan="4">신분</td><td>공무원</td><td>1급</td><td>2급</td><td>3급</td><td>4급</td></tr>
<tr><td>경찰</td><td>치안정감</td><td>치안감</td><td>경무관</td><td>총경</td></tr>
<tr><td>군인</td><td>중장,소/준장</td><td>대령</td><td colspan="2" rowspan="2">중령까지 지급(소령, 군무원 4급)미지급
*중령단독직위, 군무원 3급 부서장 : 5만원지급
(2013년 기준)</td></tr>
<tr><td>군무원</td><td>1급</td><td>2급</td></tr>
<tr><td colspan="2">월 지급액(만원)</td><td>70~112</td><td>50~97.5</td><td>45~97.5</td><td>15~35</td></tr>
</table>

○ 경찰공무원의 치안활동비[50] "사례"

> 치안활동비는 총액인건비제 운영 지침하 운영경비로 분류되나, 다른 특정업무에 대한 활동비로서의 실비의 개념이 아닌, 경정 이하 계급에 월 17만원씩 일률·고정적 성격으로 지급되어 수당항목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보수구조의 투명성 및 타 직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이관되어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경찰공무원의 기능별 주요 특정업무경비[51]

〈표3-13〉 경찰공무원의 기능별 주요 특정업무경비

(단위:원, 기준 : 1급지 경찰서 2010.12.31.기준)

구 분	생활안전		수 사	청문감사	교통외근	지구대
	생안	여청,풍속				
경비항목	생안요원 활동비	여청,질서계 활동비	수사정보 활동비	감사활동비	교통외근 활동비	지구대요원 대민활동비
지급금액(월)	100,000	300,000	300,000	150,000	200,000	200,000
치안활동비	170,000(치안활동비, 경정이하 전 경찰관 지급)					
계	270,000	470,000	470,000	320,000	370,000	370,000

※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직무활동비 관련 기사 내용[52]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일선 119센터 소속 소방관의 직무활동비는 방호활동비 17만원, 화재진압활동비 8만원 등 월 25만원인 데 비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직무활동비는 치안활동비 17만원, 대민활동비 20만원, 방범수당 17만원 등 월 54만원이다.
> 구조 · 구급대원인 소방관들에게는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119센터 소방관의 직무활동비는 지구대 경찰관의 40~60% 수준에 불과하다.
> 또 맡은 업무에 따른 활동비도 경찰관은 정보 · 보안 · 외사활동비 35만원, 수사 · 교통 · 청문감사활동비 20만원, 회계직 자료수집비 10만원 등으로 세분화돼 지급되고 있어 소방관의 2~3배 직무활동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 특정업무비는 월정직책급으로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구분하며, 예산사용 지침은 월 3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53]

○ 공무원 특정업무비 관련 현황

- 50개 정부기관 특정업무비 현금지급 금지, 정부 업무추진비 규정 강화[54]

---

50) 김종립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pp85. 201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51) 상게서.
52) 서울신문, 뉴스-공공정책, 12면 『소방관은 서러워』 직무활동비, 2011.12.6
53) 다음 블러그(http://blog.daum.net)
54) 월간 NTN 정책, (http://www.intn.co.kr)2013.2.1.

- 일반공무원 특정업무비 지급현황[55](기준 : 월 지급기준)

〈표3-14〉 일반공무원의 특정업무비 지급현황

구 분	헌법재판관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중고등학교교장	국세청감사담당관	국회의원
금 액	30만원	17만원	26만8천원	12만원	180만원

○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56] 지급 현황

-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지급 기준액

〈표3-15〉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구 분	대 상	월 액(원)
감사담당공무원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100,000 80,000
세무담당공무원	시 · 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시·군·구(과장이하)/읍·면·동 (담당이하)	100,000
예산담당공무원	시·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복식부기담당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복식부기담당공무원	100,000
관재담당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관재담당공무원(담당이하)	50,000
법무담당공무원	시 · 도 법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시·군·구 (법무담당 이하)	50,000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시·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시·군·구 (6급이하)	100,000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시·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80,000 60,000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	시·도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시·군·구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6급이하)	50,000
대 민 활 동 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50,000
구조구급활동비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방 호 활 동 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치안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170,000
방범활동비	방범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 등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100,000
교통활동비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200,000
경무활동비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경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00,000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55) 다음지식 (http://www.daum.net): 조세일보.2012.8.23.: 서울신문 공공정책 2011.12.6. 12면.
5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2항, 업무추진비 제6번항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 개선방안

① 방안#1 : 일반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 기준 적용 방안

○ 2013년도 일반공무원 17개 직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지급 평균값 적용

※ 적정 지급금액 : 월 105,700원(<표3-15>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평균값)

② 방안#2 : 유사직종(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직무활동비 평균값 적용 방안

○ 소방공무원 : 25만원(방호활동비 17만원, 화재진압활동비 8만원)

○ 경찰공무원 : 17만원(치안활동비 17만원)

※ 적정 지급금액 : 소방공무원(25만원) + 경찰공무원(17만원)÷2 = 21만원

③ 소령급 부서장 직책별특정업무비 지급 확대

○ 경찰포함 일반직 4급이상 전원 지급되는 반면 군인은 미지급, 사기저하 초래

○ 소령급은 일반공무원과 봉급 비교시 최하 29만원에서 최고 56만원의 격차[57]를 보임으로써 보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급 되어야 함.

○ 소령이하도 직책을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지급해야하는 이유[58]

① 군인의 경우 정년이 짧고, 진급 비선시 상당수가 생애 최대 지출시기(45~56세) 전역

② 장교의 경우 평균 2년 1개월마다 전출됨에 따라 잦은 이사, 자녀 전학 등 가족들의 불편과 희생, 비용 지출 수반

③ 전투준비 위주의 군 생활 영향으로 전역후 사회적응과 재취업의 어려움 발생

57) 안전행정부,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3. 2., pp.580~590.; 안보경영연구원, 4급기준 봉급 비교 결과, 2013.5.

58)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nd.mil.kr), 국방정책-장병복지증진-직업군인복지지원. 2013.2.18.,; KIDA, 『군인복지실태조사』, 2008.12.

4 장기동결 수당

4.1 개요

□ 장기동결 수당 현황

○ 장기간 동결되어 군인의 사기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지적을 받아오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수당은 해외파병수당, 부사관 장려수당, 주택수당, 교통보조비 등이 있음.

<장기동결 수당>

① 해외 파견수당
② 부사관 장려수당
③ 주택수당
④ 교통보조비

□ '10년~'12년 국정감사시 장기동결 수당관련 제기 내용[59]

○ 해외파견근무수당 : 2012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시 백군기의원(민주통합당) 제기

<제기내용[60]>

① 군인들 해외파병 수당은 수년째 동결되었으나,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은 매년 올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해외 파병수당이 몇년째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② 다른 공무원들의 재외 근무 수당이 최근 몇년 사이에 오른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③ 국방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외 파병 수당의 월 지급 기준액은 소령기준 레바논이 2,918,000원/월 으로 확인 되었음

④ 백군기의원 측은 이는 지난 수년간 지급 기준액과 동일하다며 이에 반해 공무원의 재외 근무 수당은 2000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고 밝혔음.

⑤ 군 계급으로는 중령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의 아프가니스탄 재외 근무수당은 매년 인상되었음.

○ 주택수당 : 2012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시 한기호의원(새누리당) 제기

① 8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주택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
② 대상자는 12,876명이며, 민간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주택수당은 물가상승률이 미반영 동결됨

59) 육군본부, 『13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지시』,군인 및 군무원 보수체계, 2013.2.; 뉴시스, 국방부 국감자료 분석 결과, 김형태 의원, 2012.10.15.
60)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 인터넷 네이버 블러그. (http:blog.naver.com).

4.2 해외파견근무수당

□ 목적 및 필요성

○ 해외파견근무수당은 '02년 개정이후 지급액이 미인상된 반면, 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은 4회에 걸쳐 47% 인상되어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함

○ 군의 해외파병수당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로 개선이 시급한 수당임

□ 현실태 및 문제점

○ '12년 국정감사시 백군기의원(민주통합당) 제기

○ 해외파병 수당은 10년째 동결된 수당임

○ 군과 경찰에 적용되는 해외파견 근무수당 규정 상이로 인한 지급금액 차이로 불만 및 위화감 상존

- 군 적용 : 「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 규정」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정:2001-01-0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군인 · 군무원에게 지급할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 11 · 13>

제2조(수당액)
① 제1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 · 군무원(이하"해외파견군인 · 군무원"이라 한다)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파견군인 · 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지급액과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개정 2001 · 1 · 4>

1.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특수업무수당중 재외근무수당의 3할 내지 5할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행정자치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 다만,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중 군 감시단의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개인 단위로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외근무수당의 10할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3. 해외파견군인 · 군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하사와 병에 대하여는 하사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말한다)월액의 3할에 해당하는 수당. 다만,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비전투의 목적으로 파견되는 자를 제외한다.
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위험근무수당. 다만,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정 : 2009.5.12. (국방부장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해부대' 함정근무자에 대해 장기간 함정내의 밀폐된 공간과 소음, 무교대 단독임무 수행 등의 열악한 임무환경과 조종사 및 항공기동승근무자 등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특수근무수행 등급가중치 '나' 급을 부여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의 지급액 규정

인도·파키스탄이 다른 근무지보다 열악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특례조항 삭제함.

나. 해외파견기간의 계산 규정

창군이후 최초로 함정이 파견됨에 따라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국내 기지의 사용기간을 함정출동기간을 고려 7일에서 1개월로 가산함.

다. 군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법 규정

상기 특례조항 삭제에 따른 군무원 등의 수당지급 방법을 정함.

라. 함정근무자 해외파견시 특수근무수행자로 분류하여 1등급 가산

- 경찰 적용 : 별도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규정이 없으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 파견간 기지내에서 동일한 숙식을 제공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군·경의 수당 지급차이로 불만 및 위화감 상존

※ 군·경 해외파견수당 현황 (오쉬노부대 7등급 135%)

〈표3-16〉 군·경 해외파견수당 현황

단위 : 美 달러

공무원	군	금액	경찰	금액	차액
2급	대령	3,159	경무관	-	-
3급	중령	2,893	총경	-	-
4급	소령	2,653	경정	5,464	2,811
5급	대위	2,411	경감	5,258	2,847
6급	중위	2,315	경위		2,943
	소위	2,242	경사	5,090	2,848
7급	준위	2,411			2,679
	원사	2,387			2,703
8급	상사	2,363	경장	4,818	2,455
	중사	2,074			2,744
9급	하사	2,001	순경	4,665	2,664
-	병	1,809	-	-	-

○ 정부부처 해외파견공무원 수당지급 사례 (재정경제부 국외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규정)[61]

재정경제부국외파견공무원의복무및경비지급규정

제정 1995. 9. 14 재정경제원훈령 제15호
개정 1998. 3. 3 재정경제부훈령 제1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근무중인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 이라 한다)의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경비지급

제15조 (경비의 종류) ①국외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2. 주택임차 관련 경비(임차료, 소개료, 사례금, 보증금)
3. 의료비
4. 귀 · 부임경비
5. 정착지원금
6. 차량경비(차량비, 차량보험료)
7. 업무추진 활동비
8. 생필품 구입비

□ 개선방안

1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규정』개정 및 안전행정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개정 협의 요구

① 임무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재평가[62]

○ 오쉬노 부대 : 4등급⇨5등급

* 아프칸 적대세력 등과 작전활동간 항시 교전 가능 / 아프칸 전역 동맹군 대상 공격 1일 50~120회

○ 남수단 부대 : 2등급⇨3등급

* 전투근무지원간 전투지원을 통합

○ 아크 부대 : 1등급⇨2등급

〈표3-17〉 임무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재평가

구 분	전 쟁	전쟁 외의 작전		
		분쟁해결활동	평화유지활동	그 밖의 활동
전 투	6	5(오쉬노)	4	2 (아크)
전투(근무)지원	5	4(오쉬노)	3(동명,남수단)	

61)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mosf.go.kr)-법령-훈령
62)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복지정책과, 『해외파견근무수당 개선방안 검토』, 2013.5.

②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재평가

○ 오쉬노 부대 : 위험도 “3”⇨위험도“4”

* 자살 폭탄테러, IED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아프칸 적대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위험도 증가(’09년 21,850 → ’12년 34,091건)

* ’12년도 한국 PRT에 대한 공격 : 총 33회 (차리카 5, 바그람 28)

○ 아크 부대 : 위험도 1 ⇨ 위험도 2

*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지속 및 이란과 도서영유권 분쟁으로 이란계 과격파에 의한 폭발물 설치 등 잠재적인 테러위협

* 열악한 임무수행 환경(사막, 고온 등) 고려 단비부대와 동일한 등급 적용이 타당

〈표3-18〉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재평가

지 역	전 투 지 대			비전투지대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후방지역	
등급가중치	4 (오쉬노)	3 (오쉬노, 동명)	2 (남수단, 아크)	1 (아크)

③ 특수근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대상 확대

○ 가급(조종사)에 UDT, SSU, 특전사 요원 등 추가

* 국내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조종사, 군의관, 법무관, 함정/항공기 동승 근무자는 해외파견시 1~2등급의 가중치를 적용 중

* 국내에서 동일하게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UDT, 대테러 및 특전요원들에 대해 특수근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적용

〈표3-19〉 특수근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대상 확대

지 역	특수근무수행자		미수행자
	가급 (조종사, UDT, SSU, 특전사 요원)	나급 (군의관, 법무관, 군종장교 함정/항공기 동승 근무자)	
등급가중치	2	1	0

○ 조정시 등급 및 지급금액(대위기준 : 1,786 $)

※ ① + ② + ③ 반영시 등급 / 수당 인상

〈표3-20〉 특수근무수행에 따른 조정시 등급 및 지급금액

구 분	조정전 등급	조정후 등급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비 고
		①+②	③	종합			
오쉬노부대	7등급	9등급	2등급	10등급	2,411.1	2,946.9	+535.8
동명부대	6등급	6등급	2등급	8등급	2,232.5	2,589.7	+357.2
남수단	5등급	5등급	2등급	7등급	2,053,9	2,411.1	+357.2
아크부대	2등급	4등급	2등급	6등급	1,518.1	2,232.5	+714.4

④ 수당 등급별 지급비율 상향조정 (10%)

○ 現 지급비율 10% 인상시 1등급 상향조정과 동일효과 발생

〈표3-21〉 수당 등급별 지급비율 상향조정표

등급	10	9	8	7	6	5	4	3	2	1
인상前	165	155	145	135	125	115	105	95	85	80이하
인상後	175	165	155	145	135	125	115	105	95	90이하

⬇상향조정시

(대위기준 : 1,786 $)

구 분	등 급	조정전	조정후	비 고
오쉬노부대	7등급	2,411.1(135%)	2,589.7(145%)	178.6
동명부대	6등급	2,232.5(125%)	2,411.1(135%)	178.6
남수단	5등급	2,053,9(115%)	2,232.5(125%)	178.6
아크부대	2등급	1,518.1(85%)	1,696.7(95%)	178.6

2 해외파병시 미지급 수당 병급(幷給) 지급 확대

○ 병급(幷給) 금지수당 : 교통보조비 등 10개 수당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책별 특정업무비, 군법무관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교통보조비(7~20만원) : 기본금에 포함 지급

* 일반공무원(군무원)의 경우 '11년 연금법 개정시 교통보조비 기본급에 기포함

* 계급별 교통보조비 지급현황

〈표3-22〉 계급별 교통보조비 지급현황

구 분	대령	중령~대위	중·소위	준위~상사	중사	하사
금액(천원)	200	140	120	130	120	70

○ 부사관 장려수당(15만원) : 규정 개정 후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 *단, 부사관 장려수당은 병급(幷給) 지급이 가능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19조

> ③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부사관 장려수당은 병급 지원 가능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 추진

○ 정액급식비 : 병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현행 적용

○ 시간외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책별 특정업무비 : 공무원 공통수당으로 별도 조정 제한(공무원 수당과 병행 추진)

3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인상 고려 단계별 인상 추진【1단계 20%】

: 오쉬노【253→304, +51만원】, 아크【160→191, +31만원】

〈표3-23〉 파견 부대별 해외파견근무수당 인상후 지급액

구 분	조정전	인상후(20%)		비 고	
		달러($)	원(환율1,050)	달러($)	원(환율1,050)
오쉬노부대	2,411.1	2893.32	3,037,986	+482.22	+506,331
동명부대	2,232.5	2679	2,812,950	+446.5	+468,825
남수단	2,053,9	2464.68	2,587,914	+410.78	+431,319
아크부대	1,518.1	1821.72	1,912,806	+303.62	+318,801

4.3 부사관 장려수당【군인장려수당 7호】

□ 목적 및 필요성

○ 상기 수당의 지급 목적은 부사관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증진 및 우수한 부사관의 획득으로 군의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현실태 및 문제점

○ 상기 수당은 수당 지급규정에 의거 군인장려수당 7호로 전방지역 근무 부사관은 20만원, 기타지역 근무 부사관은 1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장기 동결된 상태임.

○ 장기동결 기간 : 1997년~2013년 까지 17년간 동결됨

☞ 동결 당시(1997년 지급 금액) : 전방 20만원, 기타 15만원

○ 부사관장려수당 변천과정[63)]

〈표3-24〉 부사관장려수당 변천과정

<table>
<tr><th>년 도</th><th>주 요 내 용</th></tr>
<tr><td>'82</td><td>• 부사관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부사관수당 신설 지급
• 지급액 : 중·상사 월 20,000원</td></tr>
<tr><td>'89</td><td>•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라 장려수당이 특수업무수당에 통합</td></tr>
<tr><td>'91</td><td>• 군인장려수당으로 통합 (장려수당 7호)
<table><tr><th>지 급 대 상</th><th>지급액</th></tr><tr><td>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중사 이상의 부사관</td><td>월 30,000원</td></tr></table></td></tr>
<tr><td>'92</td><td>• 3년이상 근무하사 포함(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td></tr>
<tr><td>'96</td><td>• 전방 근무가산금 지급 월 5만원(한수이북지역) 지급
<table><tr><th>전 방</th><th>후 방</th></tr><tr><td>150,000원</td><td>100,000원</td></tr></table></td></tr>
<tr><td>'97</td><td>• 지역별 월 5만원 인상 : 전방 20만원, 후방 15만원</td></tr>
<tr><td>'06</td><td>• 지급등급 조정('06.4.1)
– 2등급→3등급(GP/GOP, 전방(해안 800고지 포함), 후방)</td></tr>
<tr><td>'10</td><td>• '10년도 장교로 근무한 기간 부사관 복무기간에 포함</td></tr>
</table>

63) 국방부, 「군인·군무원의 보수정책」, pp.110~111.

○ 공무원 유사수당 지급사례 : 방송통신위원회 현업장려수당 (월 7만원 지급)

방송통신위원회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제정 2008.12.03.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5호
개정 2010.03.23.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67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① 작업장려수당의 업무별 지급대상은 별표 1, 지급액은 별표 2 부터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한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해당 등급의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 현업장려수당 관련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① 지급대상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② 지급액 : 월 70,000원이하
③ 지급방법 : 지급대상 · 지급구분 · 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개선방안

① 현행 전방/후방 지급액에 '2013년 봉급 인상율 2.8% 적용 인상

② 개정사유 (수당 인상) : 1997년~2013년 까지 17년간 동결됨

③ 점진적으로 최전방(GP/GOP)/전방/후방으로 세분화 조정 지급

④ 인상액 산출

※ 공무원의 유사수당인 현업장려수당 월 지급액 : 7만원 고려

○ 인상액 산출 : 현행 지급액(20만원) × 봉급 인상율 2.8%[64]= 5,600원(1년 기준)

※ 17년간 동결기간 보상 : 5,600 × 17 = 95,200원 인상액 제시

○ 개선된 인상액

〈표3-25〉 부사관 장려수당 개선된 인상액

전 방	후 방
20만원+95,200원=295,200원	15만원+95,200원=245,200원

☞ 인상사유 : 동결기간 보상

64) 2013년 공무원 봉급인상율 2.8%를 적용함.

4.4 주택수당

□ 목적 및 필요성

○ 군인의 복무 특성상 잦은 이사와 별거로 주거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사의 노후와 협소로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시 높은 임차료는 가계부담이 되고 있어, 주택수당의 현실화(인상)가 절실히 요구됨.

○ '95년 이후 8만원으로 동결된 수당을 물가상승율과 민간주택 임차료를 고려하여 인상이 필요함.

○ 주택수당 현실화를 통해 사회의 물가상승률, 민간주택가격 인상 및 전세가 상승 등을 반영함으로써 민간과 일반공무원과의 격차를 줄이고, 군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택수당의 지급현황 추세를 볼 때, 과거 주택수당의 총지원액 정도의 예산으로도 상당수준의 수당 현실화가 가능함.

□ 현실태 및 문제점

○ 상기 수당의 관련 법률 및 규정 : 군인보수법(법률 제 0629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65](대통령령 제 19586호)

> 제11조의2 (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 · 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② 강등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전문개정 2008.12.31]

6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 추진 경위[66]

〈표3-26〉 주택수당 추진경위

년 도	주 요 내 용
'09.4.21	•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정책서, 군인복지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09	• 육군기본정책서, 육군 복지 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계획 반영
'10.2.4	• 국방부장관 지시, 초급간부(3년 이내자) 주택수당 지급 검토
'12	• '12년 국정감사시 장기간 동결된 수당 인상 및 현실에 맞는 수당체계 조정 검토

○ 주택수당 변천과정

〈표3-27〉 주택수당 변천과정

구 분	'83	'91	'92	'95~
기준액	2만원	3만원	6만원	8만원(2013년 현재가 : 13만 4천원)

- 군인의 주택 처우개선 일환으로 주택수당 신설('83년)
- 장기하사 포함('92년) 및 지급대상 확대 보완('97년)

○ 주택수당 집행 현황[67]

〈표3-28〉 주택수당 집행현황

구 분	'00	'01	'03	'05	'07	'09
집행금액 (억원)	180	159	135	121	121	127.6

- 관사의 추가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수당 지원금 감소 추세(수급자 감소)
- 주택수당을 현실화하더라도 예산증가의 부담은 감소할 것임.

○ 주택수당 신설이후 4배까지 인상되었으나 '95년이후 민간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주택수당은 물가상승률이 미반영 동결됨.

○ 지역에 따라 주택 임대가격의 차이가 크지만 계급, 부양가족수,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8만원 지급

○ 현 지급액은 정기예급 이자율(연4%) 고려시 전세금 2천만원에 해당

※ 서울 및 수도권, 도시권의 경우 20평이하 주택 임대 불가

○ 수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부양 가족수를 고려한 금액 조정 검토 필요

66) 육군본부 인참부 복지정책과,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p.12. 추진경위
67) 육군본부 인참부 복지정책과,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p.13 주택수당 집행 현황

○ 전국평균 월세금 및 전세금 현황(2012년 12월 기준)[68]

〈표3-29〉 전국평균 월세금 및 전세금 현황

구 분	전국평균 월세금	전국평균 APT전세금	지역별 APT전세금					
			서울	경기	울산	대전	전남	강원
금액 (원)	28만원	1억4323만원	1억 7221만원	1억 6032만원	1억 3176만원	1억 3492만원	7476만원	7549만원

※ 재외공무원 및 외국군 모두 거주지역의 임차시세를 고려하여 주택수당의 지급액 결정(미군은 전액 지급)

※ 미국 / 프랑스는 계급별 차등 지급, 일본은 차별 두지 않음.

□ 개선방안

① 중·소도시 월세금 수준으로 개선 / 부양가족이 있는 간부 우선 지급

※ 인상액 산출 : 2013년 임차료, 대도시 5천만원, 중·소도시 3천만원 기준,

대출 이자율 0.6%적용(1. 중·소도시 : 연 180만원, 월 15만원 / 2. 대도시 : 연 300만원, 월 25만원으로 각각 산출)

② 수당인상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인상액 제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주택수당 〔별표 6의2〕 수정

〈표3-30〉 주택수당 개정안

적용범위	개정안 (2014년 반영 추진)	
	현 행	수정
1.군인	○ 월 지급액 80,000원	○ 월 지급액 • 대도시 250,000원 • 중·소도시 150,000원
2. 재외공무원	○ 공간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68) 2012년 전국평균 월세/전세금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http://webcache.goolgleusercontent.com):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국내국제통계-건설,주택,토지

③ 추가방안#1 : 통계청 발표 2011년 전국 평균 월세금 28만원 적용 지급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관련근거 : 2011년 전국평균 월세/전세금)

④ 추가방안#2 : 미군의 가변주택수당제도 적용으로 물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⑤ 주택수당 규정상 지급 대상자[69] :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인자 (하사~중령), 복무기간 3년 미만인자 중 의무복무 기간이 3년 이상인자

※ 복무기간이 3년 미만이고 의무복무 기간이 3년 미만인자 : 전 계급 지급 제외

4.5 교통보조비

□ 목적 및 필요성

○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으로 군인은 대령이하 하사까지 지급되며, 일반공무원은 1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임,

○ 교통보조비는 장기 동결된 수당으로 물가상승율 및 기름값 인상을 고려시 현실성이 부족하여 수당 인상 확대가 필요함

○ 교통보조비는 2011년부터 일반직공무원 및 군무원은 기본급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군인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3년간 동결된 수당임

□ 현실태 및 문제점

○ 추진경과[70]

- 1996년도 업무추진교통비 신설

〈표3-31〉 1996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액

군인	대령	중령-대위	준위-상사	하사
지급액	15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69) 국방부, 『군인,군무원 보수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pp 165 주택수당 관련 규정 해석, 2011.10.18.
70) 국방부, 『군인,군무원 보수정책』, 2011.10.18. p.69.

- 1997년도 하위계급 업무추진교통비 인상

〈표3-32〉 1997년도 하위계급 업무추진교통비 지급액

군인	대령	중령-대위	중위-중사	하사
지급액	15만원	10만원	10만원	5만원

※중령 교통보조비 일반공무원 3급에 비해 5만원 적게 편성

○ 2001년 1월4일 교통보조비로 변경 신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2003년 직급별 2~5만원 인상

○ 2012년 교통보조비 지급 금액 현행유지

- 군인 : 대령이하 하사까지 지급

- 일반직 : 1급 이하에게 지급

〈표3-33〉 2012년 교통보조비 지급금액

군인	대령	중령-대위	준위-상사	중.소위	중사	하사
일반직	1-3급	4-5급	6-7급	8급이하		
지급액	20만원	14만원	13만원	12만원	12만원	7만원

※ 2011년 일반직공무원/군무원 : 기본급 합산 지급(군인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

○ 지급간 제한사항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전용 승용차량을 배정 받은 자

-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자

- 결근의 경우 일할계산 지급

□ 개선방안 (동결기간 및 형평성 보장 : 봉급인상율 / 동결기간 적용)

① 인상액 산출 : 2013년 봉급 인상율 적용 및 동결기간 보장 (개정안 2014년 추진)

○ 인상액 산출 : 현행 지급액 × 봉급 인상율 2.8%[71]× 동결기간 (3년)

※ 정부예산 정책 반영 및 최소한의 인상액 요구 : 2013년 봉급 인상율 적용

○ 동결기간(3년) 보장 : 2003년 현행지급 금액 동결하였으나, 일반공무원은 2011년에 기본급에 합산 매년 인상하였기에 동결기간 보상 기간판단은,

71) 2013년 공무원 봉급인상율 2.8%를 적용함.

2011년을 기준으로 반영기간은 3년(2011~2013)이 타당함.

② 개선된 인상액

〈표3-34〉 교통보조비 인상액

구분	지급액	
	현행	수정(인상액)
대령	200,000원	5,600(200,000×0.028)×3년=16,800원
중령, 소령, 대위	140,000원	3,920(140,000×0.028)×3년=11,760원
준위, 원사, 상사	130,000원	3,640(130,000×0.028)×3년=10,920원
중위, 소위, 중사	120,000원	3,360(120,000×0.028)×3년=10,080원
하사	70,000원	1,960(70,000×0.028)×3년=5,880원

☞ 인상사유 : 일반공무원은 2011년 기본급에 합산하여 매년 봉급율이 인상되었기에 공무원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동결기간 (3년) 보상 필요

③ 수당 인상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인상액 제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2항 수정[72)]

부칙 〈대통령령 제22618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2.1.6〉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령 이하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계 급	월 지급액	
	현행	수정(인상)
대령	200,000원	216,800원
중령, 소령, 대위	140,000원	151,760원
준위, 원사, 상사	130,000원	140,920원
중위, 소위, 중사	120,000원	130,080원
하사	70,000원	75,880원
비 고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하되,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삭제 〈2012.1.6.〉

7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④ **지역별 차등지급 방안 : 현행 지급금액 + 지역별 가중치 적용**

○ 도로 및 교통망,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 활용 편리성 등 고려 낙후지역 상향 지급

○ 지역별 가중치 : GP/GOP 86,800원(후방2배), 전방 65,100원(후방+1/2배), 후방 43,400원

※ 가중치 산정 금액 : 거리 및 비용 고려 KTX 서울-대전 왕복 평균 비용(43,400원 산정)

〈표3-35〉 교통보조비 지역별 차등 지급방안

구분	GP/GOP	전 방	후 방
지급 금액	계급별 현행 지급금액+지역별 가중치 합산금액		
	86,800원	65,100원	43,400원

⑤ **지역별 차등지급시 결정금액 (하사 "예")**

〈표3-36〉 교통보조비 지역별 차등지급시 결정금액

구 분		GP/GOP	전 방	후 방
지급금액	현행	70,000원		
	지역별 가중치	86,800원	65,100원	43,400원
	합계(결정금액)	156,800원	135,100원	113,400원

5 신설 및 확대 수당

5.1 대우군인수당

□ 목적 및 필요성

○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대우공무원 수당이 군인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진급 적기초과자에 대한 처우상의 보상이 전무(全無)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수당임.

□ 현실태 및 문제점

○ 군내에서도 동일한 군직을 수행하는 군무원은 수당을 지급 받으나, 상대적으로 군인만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특히, 진급률이 낮고 조기에 연령정년 도달을 고려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함.

○ 군인도 공무원임으로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급되어야함.

○ 대우군인수당 관련 시행령이 없음.

○ 공무원 및 군무원은 지급하면서 군인에게만 미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군인 처우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사기진작 등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함.

○ 대우군무원 수당규정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

> 제44조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 ①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중에서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3.26]

○ 경찰의 대우공무원 선발결과 현황[73)]

〈표3-37〉 경찰의 대우공무원 선발결과 현황

구 분	계	경 위 (경감대우)	경 사 (경위대우)	경 장 (경사대우)	순 경 (경장대우)
계급별 인원(명)	94,025	11,694	20,406	29,557	32,368
총선발자	13,878(14.7%)	4,105(35.1%)	7,045(34.5%)	2,431(8.2%)	297(0.9%)

○ 대우공무원/군무원 수당 지급 현황[74)]

〈표3-38〉 대우공무원/군무원 수당 지급 현황

구 분	관 련 요 건
공 무 원	• 대우공무원 선발대상 직급 : 4급~9급 • 대우공무원 선발인원 : 전체공무원의 20~25% • 대우공무원 대상 근무기간 – 4급~5급 : 당해계급 7년 이상, 6급~9급 : 당해계급 5년이상
군 무 원	• 대우군무원 선발대상 직급 : 4급~9급 • 대우군무원 선발인원 : 전체군무원의 15~20% • 승진소요 최저연수 : 6급(3년), 7급이하(2년) • 대우군무원 대상 근무기간 – 4급~5급 : 당해계급 7년 이상, 6급~9급 : 당해계급 5년이상

73) 김종립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1.6, p.257.

74)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포털(http:// pac.mospa.go.kr) 제도 바로알기-공무원보수제도-공무원보수체계현황, .2013.4.; 육군본부, 『13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지시』, 2013.; 육군본부, 『14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2013.2.

○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액 조견표[75] (2013년 기준)

- 수당 비교 (일반직공무원, 공안, 기능직, 경찰/소방)

※ 비교 기준 : '2013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4급 기준 (호봉별)

〈표3-39〉 '2013년 대우공무원수당 비교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군인(소령)	일반직공무원 (4급)	공안업무(4급)	기능직공무원 (기능4급)	경찰/소방 (총경,소방정)
7	105,788	118,060	129,030	73,300	122,540
8	109,707	122,210	133,180	78,900	126,690
9	113,627	126,370	137,340	86,400	130,850
10	117,547	130,520	141,490	93,800	135,000
11	121,467	134,720	145,690	100,700	139,200
12	126,616	138,660	149,630	111,400	143,140
13	129,306	142,360	153,330	119,200	146,840
14	133,225	145,800	156,770	124,700	150,280
15		149,040	160,010	129,420	153,520
16		152,090	163,060	132,230	156,570
17		154,930	165,900	134,860	159,410
18		157,590	168,560	137,350	162,070
19		160,060	171,030	139,690	164,540
20		162,380	173,350	141,920	166,860
21		164,540	175,520	144,000	169,030
22		166,570	177,550	145,960	171,060
23		168,480	179,450	147,800	174,750
24		170,270	181,240	149,550	176,390
25		171,910	182,880	151,180	177,790
26		173,310	184,280	152,540	179,070
27		174,590	185,560	153,840	180,300
28		175,820	186,790	155,080	
29				155,080	
30					

※ 군인의 경우 대우군인수당 지급을 전제로 계산함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봉급액 4.1% 적용)

○ 분석결과 (시사점)

- 일반공무원은 최소 4급 7호봉 기준, 기능직 73,300원부터 최고 공안분야는 129,030원을 동일직급의 육군소령보다 수당을 더 지급 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생명 담보 및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함에 따른 보상 필요
- 군의 우수인력 획득 및 국가안보의 핵심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필요

75) 안전행정부,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3. 2., pp. 393~397.

□ 개선방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군인사법』 관련조항 추가, 대상자 선정 / 세부예산 산출 내역 판단

①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봉급액의 4.1% 지급[76]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추가

③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대우공무원수당)개정, : 신조문 (예)

〈표3-40〉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신조문(예)

구 조 문	신 조 문
제6조의 2(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 2(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 **「군인사법」제000조**[77]「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이하생략)

④『군인사법시행령』관련 조항 신설

○ 군인사법시행령에「대우군인/필수실무요원 선발 및 지정」 관련 조항 신설 : 신조문(예)

〈표3-41〉 군인사법시행령 제000조 대우군인/필수실무요원 선발 및 지정 신조문(예)

신 조 문
제000조 대우군인/필수실무요원 선발 및 지정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해당 계급에서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근무하고 근속진급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군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령급 이하 대우군인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인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인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대상자 선정 : 공무원 대상자와 동일 선정 규정 적용

---

76) 국방부, 『군인,군무원 보수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11.10.18., p.154 : 안전행정부, 『2013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2013.2, p.285.

77) 현행 군인사법 제27조 삭제 <2011.5.24>

○ 대상자 : 소령이하~하사까지 (인원 판단 : 2013년 인사명령상 0000명)

※ 공무원 기준 적용 4급~5급 : 당해계급 7년 이상, 6급~9급 : 당해계급 5년이상

〈표3-42〉 대우군인 선발 구비요건

구 분	대우군인 선발 구비요건
주요내용	• 대우군인 선발대상 직급 : 소령~하사 • 대우군인 선발인원 : 전체군인의 00~00% • 대우군인 대상 근무기간 – 장교 : 소령~대위 : 당해계급 7년 이상, 중위~소위 : 당해계급 5년이상 – 부사관 : 원사~상사 : 당해계급 7년 이상, 중사~하사 : 당해계급 5년이상

⑥ 세부예산 산출내역 판단

○ 방안#1 :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규정 적용 (제6조의2, ①항 대우공무원수당)

- 규정 :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방안#2 : 공무원 (4개 분야 : 일반직공무원, 공안, 기능직, 경찰/소방) 7호봉 산술적 평균값 적용

- 산출 기준 : (일반직118,060원 + 공안직129,030원+ 기능직73,300원+ 경찰.소방직 122,540원)÷4=110,732.5원

- 총 소요예산 = 1인(110,732.5원)×예상인원수(0000명)

⑦ 년차별 추진계획 : 정년기간 고려 대위→소령→상사 순 적용 시행 후, 점진적 확대

○ 적용순서 : 정년 적용 원칙, 대위(43세), 소령(45세), 상사(53세)

○ 추진 목적 / 기대효과[78] :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급적기 초과자의 복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취약계급 판단 이유 : 연령정년 및 자녀 교육비/조기전역 등 생활 어려움 해당 계급

〈표3-43〉 대우군인 수당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13년	'14년	'15년 이후
내용	○수당 신설 (안) 준비 ○대상인원/소요예산 판단	○신설(안) 제출 ○예산반영/심사/시행 (대위→소령→상사 순)	대상자중 계급/대상별 확대시행

78) 국방부, 『군인수당 현실화 방안』, 2012.11.6., pp.2~3.

5.2 특수임무출동수당

□ 목적 및 필요성

○ 육군의 야전부대 중 특수임무를 부여 받고 장기적으로 출동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여 간부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전투력 향상을 기하기 위함.

○ 야외훈련은 각종 모의 폭발성 교보재 이용, 다양한 장비 운용 등 실전적 교육훈련에 따른 상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상당기간 야외숙식에 따른 육체적 고통과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등이 따르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당 신설이 필요함.[79]

○ 상기 수당 신설에 대한 왜곡된 반박논리 및 정당성 확보 필요

〈표3-44〉 대우군인 수당 반박논리 및 정당성 확보

구 분	수당신설에 대한 왜곡된 논리	반박논리 / 정당성 확보
논리#1	야외훈련은 육군의 기본임무	① 4주 이상 장기야외훈련을 대상으로 함. ② 장기야외숙식으로 자녀교육, 가정관리 소홀 ③ 4주 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은 극히 소수임.
논리#2	간부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음	① 특전사는 간부위주(장교/부사관)로 편성됨. ② 일반부대가 4주이상훈련시 병사에게도 지급 추진
논리#3	예산과다 소요 (보병대대급 추가시)	① 해군 함정출동수당과 비교시 지급금액은 1일 8,000원으로 형평성 보장함. ② 주요훈련부대는 특전사 및 특공부대로 인원이 소수정예화로 편성되어 소요인원 적음. ③ 특수임무수행부대 우선적용후 보병대대급 순차적 적용으로 예산과다 논리 부적절

□ 현실태 및 문제점[80]

○ 추진경위

-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정책서, 군인복지 기본계획('09.4.21,대통령보고)
- 육군기본정책서, 육군복지 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 반영

○ 각종 훈련시 야외에서 숙영, 위험성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보상대책이 없어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해군은 함정수당, 공군은 항공수당으로 출동가산금을 지급하나, 육군의 야외훈련에 따른 수당 미지급으로 형평성 결여 및 사기저하 초래

- 육군의 야외훈련은 위험도, 야외숙식, 야외훈련 기간, 장기간 가정생활 공백 등은 해군함정 승조원과 차이점이 없는데도 수당의 미지급은 군별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되어야함, 특히 특전사 및 특공부

79) 육군본부, 『'14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2013.2, pp. 1~2.
80) 안보경영연구원, 관련기관 현장방문 인터뷰(2013.4.22~5.3) 종합분석 결과, 2013.5.; 육군본부,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2013.2., pp.4~6.

대는 천리행군과 동계혹한 기훈련, 해상침투훈련 등 고도의 훈련과 위험을 내포하여 정신적·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

※ 해군 함정수당[81] : 매 출동시 마다 1일 8,000원(병 3,000원)의 가산금 지급

○ 해군·공군 : 자군의 독자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지급 중[82]

- 해군 : 함정수당(함정을 이용한 출동시 수혜, 1회 출동 가산금 포함)

〈표3-45〉 해군 함정수당 지급현황

구 분	계	기본수당(월)	출동가산금(월평균)
금 액	42만9천원	34만1천원	8만8천원
비 고	영관기준(34만1천원), 출동가산금('11년 132일 출동시 1일 지급금액)		

- 공군 : 항공수당(출격 횟수에 상관없이 수당 지급, 영관 : 104만원)

※ 공군은 항공수당, 해군은 함정수당을 임무/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반면, 육군의 야외숙영훈련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임무수행이라고 판단하여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군별 형평성이 결여됨은 물론 사기저하 초래

○ 외국군 야외숙영훈련에 따른 수당 지급 : 호주군의 야외숙영수당

- 지급대상 : 전시 작전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근무/숙영하는자

- 지급액(1일 기준) : 1만 8천원~3만원 수준

○ 지상에서의 야외숙영 전술훈련은 일반적인 훈련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의 훈련임

○ 야외훈련은 폭발성 교보재 사용 등 위험 노출, 기혼간부의 가정생활 유지 어려움

○ 특전사의 장기출동 및 특수임무로 인한 부대운용 제한

- 특전사훈련은 힘들고, 보상체계가 빈약하다는 등의 인식 확산

- 특전부사관 초임 획득률 감소 현상 발생[83]

〈표3-46〉 연도별 특전부사관 선발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선발	758명/998명	1,230명/1,121명	1,470명/1,050명	1,400명/1,181명	1,400명/1,067명	1,609명/1624명
선발률	131.7%	91.1%	71.4%	84.4%	76.2%	100%

- 특전부사관 장기복무 지원률 감소[84]

81) 공무원수당규정, 군인특수근무수당지급규칙

82) 안보경영연구원, 관련기관 현장방문 인터뷰(2013.4.22~5.3) 종합분석 결과, 2013.5.; 육군본부,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2013.2., pp.4~6.

83) 육군본부,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2013.2. p.5.

84) 상게서, p.5.

〈표3-47〉 연도별 특전부사관 임관 및 지원률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임관/지원	814명/ 476명	785명/ 395명	869명/ 259명	955명/ 194명	963명/ 156명	1,621명/ 592명
지원률	58.4%	50.3%	29.8%	20.3%	16.1%	36.5%

* 특전부사관 지원시 장기복무지원 희망은 54%이나, 최근 5년간 장기지원은 24.7% (지원율 저조 이유 중 52%가 고된 훈련)

- 장교의 경우도 특전사 근무는 비선호 보직으로 통용되어 근무를 최대한 회피 하고 있어 부대의 우수인력 획득 및 운용에 상당한 제한사항 발생

⇨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만큼의 상응하는 보상체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상은 금전적 보상체계가 최선의 방안임.

□ 개선방안 : 수당지급 요건 구비시 해군 출동가산금 수준 방안 및 특수근무수당 규정 개선

① 수당 반영 기준 / 지급금액 / 지급대상(인원)

○ 적용기준 : 4주 이상 장기 출동부대

* 1개 특전대대 기준 연 0회 실시(내륙전술훈련, 제주도 전술훈련)

○ 지급금액 : 개인별 1일 8,000원 지급, 훈련일자 전일(00일) 지급

② 규정 신규 반영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2]에 신규반영 : 신조문 (예)

〈표3-48〉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2] 신조문 (예)

구 조 문			신 조 문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월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월액)
항공수당		병 : 40,000	좌 동		
			특수임무 출동수당	**4주이상 장기 야외훈련을 하는 하사이상 군인**	**1일 8,000원**
군인등의 장려수당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 15년이상:880,000 10년이상 ~	좌 동		

③ 년차별 추진계획 : '2014년부터 우선적으로 특전사 적용 시행 후, 특공부대 및 보병부대로 점진적 확대

〈표3-49〉 특수임무출동 수당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13년	'14년	'15년 이후
내용	○수당 신설 (안)준비 ○대상인원/소요예산 판단	○신설(안) 제출 ○예산반영/심사/시행 (특전사 우선적 시행)	대상부대중 특공부대/보병부대로 확대시행

5.3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 목적 및 필요성

○ 군복무 특성상 GOP, 해안, 강안, 격오지 등에 근무할 경우 수행 임무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가족과 별거를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매우 큼.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으로 군 간부의 복무의욕 제고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함.

□ 현실태 및 문제점

○ 추진경위

-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정책서, 군인복지 기본계획('09.4.21 대통령 보고)
- 육군기본정책서, 육군복지 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 반영
- 2012년 국정감사시 제기 (김형태 의원, 백군기 의원, 심대평 의원)

* 김형태의원 국정감사 제기내용[85)]

> ① 영관장교 결혼 후 9번 이사,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지급 주장
> ②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2월 기준으로 별거중인 군인은 영관 24.8%, 위관 5.1%, 부사관 3.6%로 나타났으며, 결혼 후 이사 횟수를 보니 영관급 장교의 경우 평균 9.2회 이사.
> ③지급이유 설명 : "군인의 별거는 직업적 특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거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 심대평의원 국정감사 제기내용[86)]

> 심대평 의원(무소속, 충남 공주·연기)은 "격오지 근무로 자녀교육 등으로 별거생활이 불가피한 장병을 위해 군인가족 별거수당 신설을 위해 軍예산 반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

○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87)]

85) 아이크레뉴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renews.com/) 김형태의원 군인가족 별거수당 지급 필요성 주장
86) 1군사령부 국정감사 내용 (2009.10.19.)
87) 문채봉외, 『군 가족의 별거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전략』,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2012.9.17., pp.1~10.

① 군인 가족들은 잦은 부대 이동 등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겪게 되며, 별거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강화되어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됨.
② 우리 군도 국내의 근무지 이동뿐 아니라 평화유지활동 등을 포함하여 해외파병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족문제가 군 인력획득과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 별거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③ 군 직업 특성에 따른 문제(이사, 별거, 스트레스, 가족적응, 배우자 및 자녀문제 등)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조직 및 인력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 수행임무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가족과 별거하게 된 기혼 간부에 대한 보상 전무로 사기저하

○ 군복무(GOP,강안, 해안, 격오지등) 특성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별거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발생, 사기저하 원인

○ 대부분의 선진국은 군인의 가족별 가족별거 지원수당[88]을 지급하고 있음

〈표3-50〉 선진국의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지급 현황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지급액(월)	250불	222~473불	23,000~48,000엔

- 미군의 가족별거수당 (예)

○ 가족별거수당 : 월 250불
○ 전출을 명받은 복무지가 부양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지역인 경우
○ 새로운 복무지가 테러리스트 활동 때문에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 정부사정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새로운 복무지로의 이전이 지연시
○ 30일 이상의 훈련으로 인하여 가족과 별거하게 된 자
※ 강제적으로 가족이 별거함에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 군복무(GOP,강안, 해안, 격오지등) 특성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별거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발생, 사기저하 원인

88) 육군본부,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2013.2. pp.3~4.

□ 개선방안 : 선진국 지급 평균값 지급 방안

① 전방지역 근무자(GP/GOP 등)중 중·고교 자녀를 둔 간부에게 우선적 지급

② 수당 지급조건 / 지급대상(인원) / 지급금액

○ 지급조건 : 수행임무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가족과 별거하게 된 기혼간부에게 지급

○ 지급대상 / 금액

<표3-51>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지급대상/금액

지 급 대 상	금 액
GOP, 해안, 강안부대 기혼근무자 000명	월 20만원

※ 지급금액 산출근거 : 선진국 지급금액의 최소금액 산정 적용 (월 200불)

③ 규정 신규 반영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3장 제 11조의4 에 추가 : 신조문 (예)

<표3-52>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1조의4 신조문 (예)

구 조 문	신 조 문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1조의 2(주택수당)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1조의 2(주택수당)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제11조의 4(군인가족별거지원수당)** **수행임무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가족과 별거하게 된 기혼간부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5.4 가족이전 정착지원금

□ 목적 및 필요성

○ 잦은 이사로 인하여 새로운 임지에 정착하는데 경제적 손실이 발생, 이를 보상하여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과 사기를 도모하는 것임.

□ 현실태 및 문제점

○ 간부의 잦은 이사, 자녀 학교 전학 등 가족들의 불편과 희생, 비용 지출 수반

○ 군인가족의 열악한 근무여건(이사, 전학, 친구관계, 가정문제 등) 관련 기사

※ 참고자료 : 2013년 5월 24일 조선일보 A34면 <만물상> "군인 자녀 멘토단"

萬物相

〈군인 자녀 멘토단〉

▸ "엄마, 아빠가 고성에 오신지 1년이 됐는데 왜 이사 안가?
내년엔 나도 중 3인데...." 지난달 군인 아내가 어느 신문에 보내온 편지의 한 대목이다. 군인 아내는 딸아이 말을 편지에 옮기고 나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결혼 16년에 열 두 번 이사했다. 남편은 양구· 안양·포천동두천·서울·대구·정성·대천·홍천·원주 그리고 강원도 고성까지 전국을 훑고 다녔다. 큰딸은 초등학교만 네 곳을 전학했고, 초등학교 4학년 작은딸도 학교를 두 번 옮겼다.

▸ 우리나라 직업군인은 평균 열일곱 번 근무지를 바꾼다. 자녀는 대여섯 번 전학 간다. 부모를 따라 다니다 중·고교 때부터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들은 새 친구를 사귀는 솜씨가 좋다지만 대신 '평생친구'가 없다. 어떤 장소에 정서적 귀속감을 갖지 못해 겉도는 '아웃사이더 콤플렉스'도 있다. 문제가 생기면 끈기 있게 해결하기보다는 외면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회피성 인격장애, 가족과 떨어질까 겁내는 분리 불안 장애를 겪기도 한다.

▸ 미국 학자들은 군인자녀(miliary brat)가 '현대적 유목민식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평균 열 번 넘게 부모를 쫓아 옮기다 보니 군인 자녀 32%가 스스로를 보통 삶에서 '방관자'라고 느낀다.

▸ 48%는 어떤 사회적 그룹에도 못 낀다고 생각한다. 고향을 가져 본 적도 없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이며 애국심·명예심도 강하다 군인자녀는 교사·경찰관·간호사처럼 사회에 봉사하는 직업을 많이 택한다. 서울대 교수 27명이 '한민고등학교 멘토단'을 만들었다. 한민고교는 군인 자녀를 뽑는 기숙학교다. 파주에 설립돼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 군인의 자식인 교수들, 뜻에 공감하는 교수들이 모여 한민고교 학생들을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잦은 전학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아이들에게 딱 맞는 공부법과 교수법을 개발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음대 교수도 있다. 군인 신랑을 따라온 새댁이 전방부대 근처 13평짜리 군인 아파트에 도착하면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린다고 한다. 너무 남루해서이다. 그나마 함께 살면 다행이다.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비율이 공무원 13.1%의 두배가 넘는 30.7%다. 열에 일곱은 자녀교육과 근무이동 탓이다. 미성년 군인 자녀는 12만명쯤 된다. 정부도 힘을 쏟겠지만 '한민고 멘토단' 처럼 자발적인 손길들이 자꾸 나선다면 군이 되려 든든해 할 것 같다. 〈김광일 논설위원〉

○ 공무원은 이사 등 이동이 적은 반면, 군인은 작전, 보직이동 등 명령에 의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를 하게 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현재, 이사

때에 소요되는 주거시설 개선, 교통비, 자녀 전학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인 스스로 비용을 부담 개선하고 있는 실정임.

○ 다른 지역의 근무로 인한 별거나 자녀 학업문제 등을 해소할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며, 직업군인은 1 ~ 2년 단위로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기혼 군인의 30.7%는 가족과 별거 중으로 사회통계 별거율(21.2%의 약 1.5배임.[89])

○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90]

〈표3-53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관·군 비교 〉

구 분		내 용		
		군 인	공무원	일반기업
이사 및 근무지역	**이사횟수**	**16.2회**	5년간 2회[91](연고지 직속 근무)	
	근무지역	읍/면: 47.8% (격오지 41.8%)	읍/면: 33.5%	주로 도시지역
	자녀교육	잦은 전학/별거 교육	근무지교육	

* 자료 : 『2013년 6월기준 이사횟수 인터넷 자료』 다음 블러그(http://blog.daum.net); 전성진 외, 미래지향적 군복지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2002년)

○ 계급별 결혼 후 이사회수 : KIDA, 『군인복지실태조사』, '08.12

〈표3-54〉 군인 계급별 결혼 후 이사횟수

구 분	8회이하	9~14회	15회이상	기타
중 령	21.3%	43.6%	34.8%	0.3%
대 령	17.2%	35.3%	46.5%	

○ 직업 군인들의 자가 주택 보유 비율은 2008년 기준 24.7%로 일반 국민 62.9%의 절반에도 못 미침. 국방부의 2008년 군인복지 실태 전수조사(4년에 1회 조사) 결과 직업군인의 가구당 평균 주택 면적은 65.5㎡(19.8평)에 그치고. 결혼 후 평균 이사 횟수는 장군 16.4회, 영관급 9.2회에 달함.

> 임관한 지 30년 된 육군의 모 대령은 "주로 야전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안 20번 이사를 했다"며 "잦은 전·입학으로 자녀들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했다"고 말함

○ 주요 정착비용 소요 : 주거시설 (도배비, 장판비), 교통비, 자녀학비 (교재, 교복)

89)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mil.kr) 국방정책-장병복지증진-군인복지기본계획
90) 2007년 한나라당 김영우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내용
91) 다음 블러그(http://blog.daum.net), 주거 및 이사실태(이사횟수 및 이사비용)

□ 개선방안 : 현물가 수준 고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신규 반영

① 수당 지급조건 / 지급대상(인원) / 지급금액

○ 지급조건 : 군 인사명령상의 전출로 인한 가족단위 이사를 한 기혼간부에게 지급

※ 기본 구비요건 : 가족전체 이사, 자녀학교 전학,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절차 완료 간부, 인사명령상의 근무지로 이사한 경우 적용 (단 군지원 숙소 미입주자)

○ 지급대상 / 지급금액

※ 우선지급 대상자 : GOP, 해안, 강안부대 근무 전출자

〈표3-55〉 가족이전 정착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지 급 대 상	지 급 금 액
GOP, 해안, 강안부대 전출자 000명	1회 45만원(매 이사시/인사명령근거)

○ 지급방법 : 실비보상 (이사간부 사용금액 영수증 첨부 사용액 확인)

② 세부예산 산출내역 판단

○ 지급금액 : 최소한의 지급 금액 산정[92] (15평/방2개, 읍면단위 이사 기준)

〈표3-56〉 가족이전시(1회) 소요금액 산출기준

구 분	계	전기/가스설치	도배비	장판비	교복비(1인)	체육복(1인)
지급액	45만원	5만원 (출장비/재료비)	10만원 (방 2개)	20만원 (중급)	7만원 (중고 등학교)	3만원 (중고 등학교)

※ 기본항목 포함 사항 : 이사거리에 관계없이 도배비, 장판비, 자녀학비(교재, 교복비 등)

③ 규정 신규 반영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3장 제 11조의 5 에 추가 : 신조문 (예)

〈표3-57〉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1조의 5 신조문 (예)

구 조 문	신 조 문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1조의 2(주택수당)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1조의 2(주택수당) 제11조의 3(육아휴직수당) **제11조의 5(가족이전 정착지원금)** **군 임무수행상 인사명령에 의거 가족전체가 이사를 한 경우, 새로운 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혼간부에게 이사시 45만원의 가족이전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92) 안보경영연구원, 현장 물가 자료조사 분석(2013.4.22.~5.4) 결과, 2013.5.

5.5 항공수당

□ 목적 및 필요성

○ 육군의 공격헬기(AH-1S)등 조종사는 무월광·만조 취약시기 전개작전, 긴급작전 출동대기태세 유지, 각종 합동·협동훈련 수행 등 육군항공의 핵심전력으로써 공격헬기(AH-1S)를 조종하고 있으나,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보다 하위의 수당을 지급 받음으로써 상대적인 사기저하의 원인이 됨. 따라서 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 현실태 및 문제점

○ 추진경위

- 군인보수법(법률 제06290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별표2 (항공수당)
- 국방부 수당개정 야전부대 실태확인 지도방문시 항작사 소요제기('07.5.17)

○ 육군의 공격헬기(AH-1S)등 조종사는 고도의 조종기술로 전천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우수요원으로써 공군전투기 조종사와 비교 동일한 임무 수준임.

○ 공군조종사와 육군(AH-1S)조종사 비교

<표3-58>공군조종사와 육군(AH-1S)조종사의 임무수행 여건비교

구 분	공군 (전투기조종사)	육군 (AH-1S조종사)
대기여건	• 모기지에서 제반여건 충족상태 에서 대기 • 복지여건 우수	• 격오지(타부대)에 전개 대기 • 복지여건 불비
임무수행 위험도	• 고속/고고도에서 비행 • 사출좌석 장착으로 생존성 보장	• 저속/저고도 비행으로 악기상 및 지상장애물에 취약 • 사출좌석 없음
대기일수	• 조종사 1인당 월간 대기일수 – 긴급대기 : 월 6일 – 30분대기 : 월 8일	• 조종사 1인당 월간 대기일수 – 긴급대기 : 월 3회 – 30분대기 : 월 4회 – 취약시간 전개대기 : 4명 (월 15일)

○ 공군과 비교시 육군(AH-1S)조종사 근무여건 상대적 열악/위험도 높음.

○ 임무 수행 특성상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여 보상이 요구됨.

○ 공군조종사의 월등한 수당 및 복리후생 지원 : 육군항공조종사의 열악함과 비교됨

<표3-59>공군조종사 수당 인상 관련 신문기사

뉴스기사[93] : 2010년 7월 20일

제목 : 공군조종사 수당 인상…월100만원 추가 지급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조종사는 연 1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 조종사의 평균 월 보수는 663만8000원으로 민간 항공사 조종사 919만2000원의 72.2% 수준이어서 공군에서 민간업체로 이직하는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그에따라 공군 핵심 전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16~21년차 조종사들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정기관과 대학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대학교원에게 월 60만~7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일반 공무원의 보수가 낮다는 이유로 행정기관 교류 근무를 기피해왔다.

○ 최근 육군항공과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94] 비교 : 사고 위험성 더 높음

<표3-60 최근 육군항공과 공군전투기 추락사고 현황>

93) MK뉴스(http://news.mk.co.kr) - 사회면 - 공군조종사 수당 인상…월100만원 추가 지급

94) 서울신문 "2000년 이후 전투기 추락사고 일지" 2012.11.15. 기사, ; 조선일보, 2012. 11. 30.; 인터넷뉴스(http://blog.naver.com; http://issue.chosun.com/site/date;) MBC뉴스(http://imnews.imbc.com), 2011.11.2.

구 분	주 요 사 고 내 용	비고
육군항공	① 1994년 UH-60, 용인 야산 추락, 조종사, 공군참모총장 등 6명 사망 ② 2003년 8.14, 경북 영천 UH-1H추락, 조종사포함 7명 사망 ③ 2008.2.20.경기 양평 UH-1H추락 조종사/부조종사 탑승인원 7명 사망 ④ 2010년 4.3 경기 남양주시 500MD 추락 조종사/부조종사 사망 ⑤ 2011년 11.2 500MD야산 추락, 조종사 사망, 부조종사 부상	5건
공 군	① 2010년 3.2 강원도 황병산 F-5E,F-5F추락 조종사 등 3명사망 ② 2010년 6.18 강원도 강릉 동해상 F-5F추락 조종사 2명 사망 ③ 2012년 11.15 T-50B 블랙이글 추락 조종사 사망	3건

○ 육군항공 조종사의 주요훈련 실적 : 연합 및 합(협)동 작전실시[95)]

〈표3-61 육군항공 조종사의 주요훈련 실적〉

구 분	계 획	실 시	항공기 지원 대수(대)			
			계	AH-1S	500MD	BO-105
계	750	580	393	301	79	13
JAAT	155	79	327	237	79	11
AAT	56	33	32	32	-	-
기 타	539	468	34	32	-	-

○ 연간 육군 항공기 주·야간 비행실적 증가[96)]

〈표3-62 연간 육군 항공기 주·야간 비행 실적〉

구 분	5년 평균 ('03~'07)	'08년	'09년	증 감
시간(H)	108,714	85,735 (항작사 야간 3,522)	96,495 (항작사 야간 3,152)	+10,760 (13% 증가)

□ 개선방안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수당 인상 확대 방안 추진 인상율 / 인상금액 및 대상자 파악/ 예산반영

① 수당 지급조건 / 지급대상(인원)

○ 지급조건 : 군 인사명령상의 육군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부사관, 군무원, 병)

○ 지급대상 : 갑 2~3호, 갑 4~5호, 을 1호, 을 2호, 을3호, 동승병 등

95) 육군본부,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2013.2., pp.26~27.
96) 상게서, 2013.2. p.27.

② 세부예산 산출내역 판단 : 공군 수송기 조종사와 형평성 보장[97)]

○ 소요예산 산출 근거 <1> : 공군 수송기 조종사의 항공수당 10% 인상[98)]

〈표3-63 항공수당 인상액〉

구 분	기 존	인 상
수당 인상액	60만 5천원(월)	66만 6천원(월)

※ 관련근거 : 국방부 2012. 3. 9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요예산 산출 근거 <2> : 국방부 2006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99)]

③ 공군전투기 조종사의 조종사 업무수당 인상액

〈표3-64 공군전투기 조종사의 업무수당 인상액〉

구 분	영관급	대위	중·소위	기타
인상액(월)	8만 6천원	6만 9천원	5만 3천원	5만 3천원

※ 동승병 : 2013년 1만원 인상

※ 관련근거

> 국방부는 2006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투기 조종사의 업무수당을 영관급은 86만원에서 94만6천원으로, 대위는 68만7천원에서 75만6천원으로, 중.소위는 52만8천원에서 58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등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함

④ 적용방안 : 전 인원 2013년 지급기준액 대비 10% 인상,

※ 인상 이유 : 공군 수송기 조종사 항공수당 10%인상, 기타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해 조종사 업무수당 10% 인상, 위험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5.6 위험근무수당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적 차원의 특수임무 수행과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전사 장병들의 수당 확대를 통해 유사 수당과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사기를 고양

97) 중앙일보 뉴스정치면, 軍 부사관-특전사, 다음 달부터 수당 인상, 2012.3.9.

98) 국방부 ,「군인,군무원 보수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11.10. pp.153~155, 민간항공사 급여의 85%수준 개선을 위해 격년제 10% 인상

99) 동아뉴스 정치면, 공군조종사 복무연장 수당신설, (http://news.donga.com).

시키기 위해 인상 확대가 필요한 수당임.

※ 국회 국정감사시(2009년) 심대평의원 제기 : 특전사 위험수당 인상 필요

□ 현실태 및 문제점

○ 추진경위

① 2000년 이후 1회(2005년)만 20% 인상
② 2009년 실종사자 위주 수당체계 개선 토의시 강하임무 횟수에 따른 수당 인상(5%) 및 천리행군 수당 신설(7만원)을 육군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나, 2010년 예산 편성시 미반영
③ '09년 10월 국정감사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특전사 장병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적정수준의 수당 인상금액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구
④ '2011년 예산에 위험수당 '갑호' 는 인상되었으나, '을'호는 미인상됨

○ 국가적 특수임무 완수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 강구 필요함

- VIP 및 국빈방문, 국가적 행사시 경호작전 지원 : 연평균 30~35회
- 해외파병 임무수행 : 32개부대/23,851명
- 국가 및 광역시·도 행사지원 : 연 10회이상

〈주요 행사지원 내용〉

① 국군의날 행사	④ 태권도 시범
② 지상군 페스티벌	⑤ 특공무술 시범
③ 고공 및 집단강하	⑥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구조

- 외국군 사절단 방문시 시범행사 : 연 25~30회

○ 임무수행의 위험성 및 난이도를 고려한 수당 확대 필요

- 수중 및 해상침투시 수중 40m이상 잠수훈련 수행
- 최근 10년간 해상훈련시 인명사고 발생 3명
- 천리행군 등 육상침투 및 작전수행시 야간훈련/폭파, 레펠 등 위험성 증대
- 야외훈련 및 대기태세 유지 : 연평균 6개월 이상

□ 개선방안 : 유사직종 【공군수송기조종사 항공수당(10%인상), 수의장교 장려수당 50%인상】 등 형평성 및 봉급 인상율 고려, 대상별 '갑·을·병 호(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10% 인상 추진

① 수당 지급대상(인원)

○ 지급대상 : 갑·을·병종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② 세부예산 산출내역 판단 : 갑·을·병종 10% 인상

○ 소요예산 산출 근거 : 타군 및 공무원과 형평성 보장

- 공군조종사 항공수당 10%인상, 수의장교 장려수당 8만원 인상 고려

<제목 : 국방부 특수근무수당 인상>[100]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과 공군 수송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각각 5%, 10% 인상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작업에 투입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수의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5.7 장려수당 1호(대포병탐지레이다)

□ 목적 및 필요성

○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특수장비중 군인장려수당(1호)에 포함되지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 하기위해 개선하는 사항임.

○ 군인장려수당(1호)는 첨단장비 조작 및 운용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장비들을 고려시 대포병탐지레이더 조작 및 운용요원에게 지급 필요.

○ 중요장비 조작 및 운용요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증진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

□ 현실태 및 문제점

○ 동일장비 정비인원에게는 최첨단 장비 정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10년부터 군인장려수당 수당 지급

<표3-65 군인장려수당 지급액>

구 분	위관(10년이상)	위관(5~10년)	부사관(10년이상)	부사관(5~10년)
지급액(원)	110,000	90,000	90,000	80,000

※ 대상장비 : AN/TPQ-36, AN/TPQ-37, ARTHER-K

○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대포병 탐지장비 중요성 인식

○ 최근 적의 포병에 의한 국지도발 및 비대칭 전력 운용 가능성 증가 상황을

100) 2012년 3월9일 연합뉴스 기사

고려시 대포병탐지레이더 조작요원의 임무 중요성이 증가됨

○ 형평성 확보 / 우수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 유도

※ 현재 군인장려수당(1호)를 지급하고 있는 장비 : 토우, 발칸, 전차, 자주포, 현무, 비호, 천마 등

○ 주요장비 가격 비교

〈표3-66 장려수당 1호 관련 주요장비 가격비교〉

기존 지급대상 장비	추가 지급 건의 장비
토우(1.2억), 발칸(5.9억) 현무(4.9억), 장갑차(20억)	AN/TPQ-36(38억), AN/TPQ-37(140억), ARTHER-K(200억)

□ 개선방안 :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대상자 확대 지급 / 예산 산출 내역 제시

① 규정 신규 반영[101)]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개정 추진

② 수당 지급대상(인원) / 지급금액

○ 부사관(기존 지급자) : 35,000원,

③ 수당 지급대상 확대 이유 : 첫째, 연평도 포격사건과 최근 남북 긴장상태 고려 초기 대응전력의 핵심이기 때문임. 둘째,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대기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가중됨. 따라서 대포병탐지레이더 조작요원의 장려수당 1호 포함은 정당함

5.8 장려수당 3호(응급구조사)

□ 목적 및 필요성

○ 응급구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현실태 및 문제점

○ 추진경위

101) 국방부 인터넷(http://.mnd.mil/kr) -법령정보-국방부 관계법령-『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2010년 육군참모차장 주관하 시행된 우수인력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임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 소요

○ 응급구조사들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불비한 대대급에 집중편제 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 의료행위를 함에도 수당 미반영됨

○ 의료기사들과 동등한 학력수준을 거쳐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기사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민간대학병원 재직 응급구조사 월 특근수당 : 15만 2120원 지급[102)]
- 전국 대학병원에 3,000여명 근무, 매년 39개 대학에서 700여명 배출

○ 장려수당 3호 (응급구조사)[103)] 확대 필요성
- 응급구조사에 대한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응급구조사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검토 내용

> ① 2급 응급구조사 임무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심박 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등의 업무수행,
> ② 1급 응급구조사 임무는 2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약물투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 ③ 1급 응시자격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과를 졸업한 자나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응시할 수 있음,
> ④ 2급 응시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서울시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 국군군의학교)에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 해당됨.

○ 응급구조사 관련 주요현황[104)]
- 응급구조사 인력은 1급 6,070명, 2급 5,259명으로 향후 2010년까지 응급구조사가 약 18,000명 정도 (보건산업진흥원 추계) 필요할 것으로 예측함.
- 월 평균임금은 228만원, 하위 25%는 180만원, 상위 25%는 29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대표적 근무직책 : 소방서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관리자 등
- 응급구조사들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불비한 대대급에 집중편제 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

102) 한겨레신문, "저임금, 중노동... 응급구조사 SOS, 처우개선 절실," 2012. 5. 21.
103)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응급의료에관한 법률시행규칙 2013.2.28.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www.q-net.or.kr)
104)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www.q-net.or.kr)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수당 미반영됨.

- 의료기사[105]들과 동등한 학력수준을 거쳐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기사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유자에 대하여 군인장려수당 반영<군인장려수당(3호)> 하는 방안임.

○ 이를 통하여 형평성 및 우수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를 유도함.

□ 개선방안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

① 규정 신규 반영[10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개정 추진

※ 세부개정 추진(안) : 본 규칙관련 국방부 자료 열람은 인가된자에 한해 가능함으로 연구에 제한, 추가적 세부추진(안)은 제기부서 발전

② 수당 지급대상 / 지급금액

○ 대상 : 응급구조사

○ 지급금액 : 월 50,000원,

5.9 장려수당 4호(간호부사관)

□ 목적 및 필요성

○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군인장려수당 4호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간호장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사관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수당임.

---

105)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2012.5.23: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①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의료기사는 면허증을 취득하는 국가자격시험이며, 응급구조사는 순수한 국가자격시험임" ③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06) 국방부 인터넷(http://.mnd.mil/kr) -법령정보-국방부 관계법령-『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 현실태 및 문제점

○ 추진경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

※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

-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간호과 장교 장려수당 지급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적용

○ 장려수당은 특수업무수당의 일부로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서는 특정행정업무 분야의 '의료업무수당'으로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만원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호과 부사관은 동 규정에 명시된 바대로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해당되나,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간호과 장교로만 명시되어 있어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수당은 군인장려수당(4호) 대상자 확대 방안임

○ 수당 지급근거 위해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 추진 해야함

○ 수당지급 형평성 유지 및 간호과 부사관 사기 증진으로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

○ 세부 예산 산출 내역 마련시 : 기존 장교에 부사관 추가가 필요함

○ 형평성 확보 / 우수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장기복무 유도 가능

□ 개선방안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대상자 확대 지급, 예산 산출 내역 제시

① 규정 신규 반영[10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개정 추진

※ 방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간호과 장교로만 명시

107) 국방부 인터넷(http://.mnd.mil/kr) -법령정보-국방부 관계법령-『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되어 있는 규정에 간호부사관 추가

② 수당 지급대상(인원) / 지급금액 : 간호장교 기존 지급자 / 50,000원

5.10 특수지근무수당

□ 목적 및 필요성

○ GP/GOP 접적지역 및 격오지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상시 대기태세를 유지하며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소 책정되어 장병의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를 고양하여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 해군의 함정수당, 공군의 항공수당에 비교되는 육군의 대표수당으로 군별 형평성 보장차원에서 인상이 요구되는 수당임.

○ 추진 경위[108)]

〈표3-67〉 특수지근무수당 추진경위

년 도	주 요 내 용
'05.5.12	• 국방부에 위험수당 전환 건의 • '05년 보수체계개선 업무에 포함
'05.6.24	• 28사단 GP사건 후 육군핵심과제로 재추진
'05.7.11	• 관련법령 개정 육군(안) 국방부(중앙인사위) 건의
'05.8.10	• DMZ 작전활동의 가시적 위험성 국방부(중앙인사위) 건의
'05.8.12	• 병영생활개선대책위 개혁과제로 반영/대통령 보고('05.10.12)
'07	• '07~'10년 보수체계 개선 국방부 건의
'11	•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반영(GP/GOP근무자 가산금 0.5~2만원)

□ 현실태 및 문제점

○ 상기 수당의 관련 법률 및 규정 : 군인보수법(법률 제 0629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9586호)

108) 육군본부 인참부 복지정책과,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p.15, 추진경위

○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 지급액[109)]

〈표3-68〉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금액

지 급 대 상		'13년 수 당 액
"갑" 지역	○비무장지대 및 서해 5개도서 상주근무자 ※ 육군 : GP근무자	○중사~중령 : 6.0만원 * 가산금 : 3만원 ○하사 : 5.5만원 * 가산금 : 2만원 ○병 : 1.65만원 * 가산금 : 1.5만원
"을" 지역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근무자 및 해상 경계임무를 위한 상주근무자 ※ 육군 : GOP근무자, 해안초소 근무자 - 800m이상 고지 근무자	○중사~중령 : 6.0만원 * 가산금 : 2만원 ○하사 : 5.5만원 * 가산금 : 1만원 ○병 : 1.32만원 * 가산금 : 0.5만원

○ **수당 지급 변천 과정**

〈표3-69〉 특수지 근무수당 변천과정

연 도	변 경 내 용
'62년	○비무장지대 근무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신설 (사병) (DMZ : 60원/일), GOP : 40원/일, R/D기지 : 10원/일)
'79년	○지급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갑지역 : 100원/일, 을지역:70원/일)
'82년	○지급대상에 부사관 포함 및 지급액 인상 (상중사 : 23,000원/ 월, 하사:150원/일, 병:120원/일)
'94년	○지급기준액 인상 (중령~하사:5만~4.5만원, 병:갑360원/을300원/일)
'04년	○현, 특수근무수당 기준액 적용(하사이상:6만~5.5만원, 병:1.2~1.5만원)
'07년	○ "갑" 지역 가산금 형태지급 (+1만원~+2만원)
'11년	○ GP/GOP 가산금 인상 (+0.5만원~+3만원)

○ 타군 또는 타수당에 비해 기준액 인상폭 낮고 '94년 이후 실질적인 보상 미흡

○ GOP/해안 근무자와 유사한 격오지 근무자[110)]까지 지급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

- 수방사 특정지역 경계근무자 적용 확대 이유

109) 상게서, p.1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급액

110) 육군본부 인참부 복지정책과,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p.17. 특수지근무수당

① 경계/경호 대상측면에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을 대상 으로 강도 높은 긴장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계 및 경호 임무 수행
② 위해요소도 적 비정규전 요원 뿐 아니라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불특정 불순요인에 의한 우발적 행동에 대해 24시간 빈틈없는 상시 작전태세 유지 필요
③ GOP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임무를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행 함에도 불구하고 접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800m 이하 고지근무자 지급대상 확대 이유

① 800m 이하 고지라 하더라도 R/S, 통신중계소, 방공진지, 000 경비중대, 00사 경비중대, 00유격장 중대, 선점부대 등은 전방 GOP/800m 이상 고지에서 근무하는 장병과 동일한 근무 여건이며,
② 근무지역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도시로부터 상당히 이격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함
③ 일반부대에 비해 대부분의 병사들이 부대배치 및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근무의 긴장도가 높으며, 휴가시 귀가 및 귀대까지 추가시간이 소요되고 가족 면회시에도 교통여건,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① 캐나다 군별 수당체계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

○ 형평성을 중시하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캐나다 군의 수당구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육군의 지상근무수당은 타군(해군, 공군)의 해상근무수당이나 비행승무원 수당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보상되고 있음.

〈표3-70〉 캐나다군의 군별 수당체계

구 분	내 용
비행승무원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311달러 ~ 591달러[111]까지 지급
지상근무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411달러 ~ 782달러까지 지급
해상근무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494달러 ~ 751달러까지 지급

* (자료: http://www.cmp-cpm.forces.gc.ca/dgcb-dgras/ps/index-eng.asp

○ 지상근무수당 액수 높게 책정된 이유 : 해상이나 비행승무에 종사하는 군인이 겪는 위험의 정도에 대비하여 육군 종사자 중 위험지역에 근무하는 이들의 위험도가 높아서, 형평성 및 보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이룬

111) 2013.6.27. 현재 캐나다 달러 기준(캐나다 달러 당 약 1101원).

사례에 해당되고 있음.

○ 캐나다 육군의 경우에 위험지역 근무자의 지상근무수당은 위험지역 근무개월수를 6등급으로 구분하여 누적근무일수 별로 최소한의 보상을 수행하고 있음.

<표3-71> 캐나다군의 위험지역 근무개월수 등급

적용 시작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4	등급5	등급6
2012. 4. 1	306$	434$	564$	682$	727$	770$

* 자료: http://www.cmp-cpm.forces.gc.ca/dgcb-dgras/pub/cbi-dra/205-eng.asp)

○ 한국 육군의 GP/GOP 접적지역 및 격오지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상시 대기태세를 유지하며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타군과 형평성을 맞추어(예를 들어 해군 및 해양경찰의 함정수당 등) 지급할 필요가 있음.

② 특수지근무수당 적정 지급액

○ 방안#1 : 해군 함정근무수당 지급액 적용
(병, 하사~중령 : 월 급여액의 5% 이내)

○ 방안#2 : 해양경찰청의 특수함정근무수당 지급액 적용안
(병 : 2만원, 하사~중령 : 65,800 ~ 123,000원까지 차등 지급)

Ⅳ.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1 외국 사례분석(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1.1 미국

□ 미군의 보수체계는 미국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따름[112)]

○ 미국 연방법에 규정된 연방공무원 보수표는 크게 일반직 공무원, 우정 공무원, 블루칼라 공무원, 특수직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보훈처 의료공무원, 외교직 공무원의 7가지로 구성되며 군인의 경우 특수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됨.

□ 미국 정부는 군인 급여에 대해 '군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은 미국 사회의 높은 표준으로서 미 국민의 자부심을 반영 할 수 있어야 함' 과

112) 미국 연방 법전 Chapter 53, Section 5303.

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방전략의 성공은 '인력의 질' 과 '헌신' 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113]

○ 따라서 미국의 군인 보수체계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계급별로 기본급여를 차등 적용하고 있음.

□ 미군의 기본급(Basic Pay)은 한국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급과 복무연한에 따라 결정됨.

○ 호봉(Pay Grade)은 사병, 사관, 준사관, 장교로 각각 구분됨. 사병과 부사관의 호봉은 E-1(이등병)에서 E-9(주임상사)까지 있으며, 준사관의 경우 W-1(준위)에서 W-5(상급준위장)까지, 장교의 경우는 O-1(소위)에서 O-10(중장)으로 구분됨. 대장급 장성의 경우 '13년 기준으로 15,913달러의 월 봉급을 지급받음[114].

〈표4-1〉 미군의 계급별 봉급액 (단위: 만원)

계급	중사	원사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대장
금액	300	527	365	422	480	556	667	900	1750

* 자료: Military Pay Tables, Jan 1. 2013.

□ 미군의 수당은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특수업무수당(Special Pay), 주택수당(Basic Allowance for Housing), 생계보조수당(Cost of Living Allowance), 기본부식비(Basic Allowance for Subsistence) 등을 받고 있음.

○ 특수업무수당은 하위수당체계로서 항공수당(Aviation Career Incentive Pay), 위험근무수당(Hazardous Duty Incentive Pay), 항해수당(Career Sea Pay), 잠수수당(Diving Duty Pay), 잠수함수당(Submarine Pay), 긴급위험수당(Hostile Fire and Imminent Danger Pay), 특수지근무수당(Hardship Duty Location Pay), 특수전투수당(Special Warfare Pay), 특수임무수당(Special Assigned Duty Pay), 외국어수당(Foreign Language Pay) 등으로 세분됨.

□ 미군의 수당체계[115]

113) 미 국방백서 군인급여편
114) http://www.dfas.mil/militarymembers/payentitlements/militarypaytables.html
115) 신경식,이한솔『미 육군과 한국육군의 복지문화 비교연구』,한국군사논집 제67집 제2권, 2011.8.

○ 기본 주택수당(BAH :BasicAllowanceforHousing)

- "기본 주택수당(BasicAllowance for Housing)"은 장병들 자신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주거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급되는 수당 (DepartmentofDefense,2009).
- 이 수당은 장병이 군에서 제공되는 관사에 거주하지 않을 때 지급됨.
- 기본주택수당은 매월 지급 되는 비과세 수당이며, 이 수당의 등급은 첫째, 호봉에 비례하여 수당 등급이 정해지고, 둘째, 장병이 거주하는 지역의 월 평균 주택 임대가격에 상응하도록 책정되어 있으므로 물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됨

○ 해외주택수당(OHA :OverseasHousingAllowance)

- 장병이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기본주택수당 대신 지급

○ 가변주택수당(VHA :Variable Housing Allowances)

- "가변주택수당(VHA: Variable Housing Allowance)"은 미국 내에서 물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 해외생계유지비(Overseas COLA : Cost of Living Allowance)

- "해외생계유지비(Overseas COLA :CostofLiving Allowance)"는 해외와 미국본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사이의 구매력을 동일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 기본생계수당(BAS:BasicAllowanceforSubsistence)

- "기본생계수당(BAS:BasicAllowanceforSubsistence)"은 장병의 식비를 차감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Army.com,2009).

○ 수당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116]

〈표 4-2〉 미군의 수당체계

116) http://www.dfas.mil/militarymembers/payentitlements/militarypaytables.html

구 분	내 용
주택수당	근무지의 임차료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생계보조수당	물가가 비싼 지역 근무자에 대해 추가지급
기본부식비	사병 및 부사관 : 월 $272.26 / 장교 : 월 $187.49
항공수당	복무연수에 따라 월 $125~840(15~21년차가 최고)
항해수당	장교 : 월 $730 이내 / 사병 및 부사관 : 월 $730 이내
잠수수당	장교 : 월 $240 / 사병 및 부사관 : 월 $340
잠수함수당	복무연수에 따라 월 $75~385
위험근무수당	비행관련 업무 수행 비조종사에 월 $150~250 지급
특수지근무수당	근무지에 따라 월 $50/100/150 차등 지급
긴급위험수당	화재진압 및 폭발물 처리자에게 월 $225 지급
외국어수당	외국어 능통자에게 월 $300~1,000 지급
특수전투수당	전투지역 근무자에 최대 연 $10,000 지급
특수임무수당	임무난이도에 따라 월 $75~450 지급

□ 미군의 수당체계 시사점

○ 미 육군은 민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소속 장병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있음.

○ 미 육군이 소속 장병에 대해 무척이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 육군은 이렇게 급여 체계의 개선을 통해 군 내 양질의 인적 자원 유입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 군의 급여 체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1.2 일본

□ 일본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제 수당으로 구성되며 군(자위대)은 '방위청직원급여법' 에 의거 독자적인 규율을 받고 있음.

○ 군을 포함한 공무원의 봉급을 결정하는 봉급표는 10종 18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절차는 「봉급표 결정 → 직급 결정 → 호봉 결정」와 같음.

□ 일본 국민의 자위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위대 충원률이 저조(86.8%)하여 인력획득 및 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위대의 보수 수준을 민간 대기업체보다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기본급여는 아래 표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4-3〉 일본군의 계급별 봉급액(단위: 만원)

계급	중사	원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대령	소장	대장
금액	269	304	192	238	312	379	448	471	930

□ 일본 자위대의 수당은 봉급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크게는 일반수당, 특별급(보너스), 특수지역에 관련한 수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요 수당의 종류별 지급액은 〈표4-4〉와 같음.

○ 전반적인 수당 체계는 우리나라의 수당 체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수당'은 우리 나라의 '상여수당' 이나 '가계보전수당'과 매우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음.

〈표4-4〉 일본군 수당체계

구 분	명 칭	지 급 기 준
일반 수당	부양수당	배우자 13,500엔 / 자녀 5,500엔 대학생, 고교생 등에 가산 4,000엔
	조정수당	민간기업의 보수, 물자, 생계비가 특별히 높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할증 지급
	주거수당	전세 및 월세 최고 27,000엔 / 자가 2,500엔

	통근수당	대중교통수단 이용자 최고 50,000엔 자동차 사용자 2,000~20,900엔 등
	초과근무 수당	시간당 단가 : 125/100(주휴일 135/100) 심야 150/100(주휴일등 160/100)
	봉급특별 조정액	관리자급에 8~25% 지급
특별급	기말근무 수당	전체 일반 공무원에 지급(연간 525%) 3월 : 55%, 6월 : 220%, 12월 : 250%
	기말특별 수당	정무직 공무원에게 지급(연간 405%) 3월 : 55%, 6월 : 160%, 12월 : 190%
기타수당	특수근무 수당	현저하게 위험, 불쾌, 곤란한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폭발물 취급업무, 재해복구업무 등)
	한랭지 수당	한랭지에 근무하는 직원에 지급(1~5급 중 4,5급지에는 가산액이 있음)
	특수지 근무수당	현저하게 생활이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는 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지급(4%~25%)
	독신부임 수당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직원에 지급(원 주거지와의 교통거리에 따라서 20,000~49,000엔)

1.3 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 보수제도 : 연공급 위주 호봉제

○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됨.

○ 기본급 : 단일봉급지수망(grille indiciaire unique)이라고 불리는 단일봉급표가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결정 : 1968년 이래 인사부장관과 노조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면, 합의 결과는 의회에서 승인

□ 프랑스 공무원의 기본급체계 : 봉급에 직무상여지수(NBI)[117]를 고려하여 결정함.

○ 규정상 중·하위직 수당은 봉급의 17%를 초과할 수 없고, 고위공무원은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대학교수 수당 : 기본급의 1%로 가장 적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기본급의 약 40%에 달하는 수당 지급

○ 프랑스 공무원의 수당제도 특징 :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문제점 : 직무와 연관성이 불분명한 각종 수당 난립, 부처별 불투명하게 운영

□ 프랑스군 수당체계

〈표4-5〉 프랑스군 수당체계

구 분	내 용
거주지수당	• 대도시권은 봉급의 3%/일반도시권은 봉급의 1% 농촌지역은 미지급
부양자녀수당	• 1자녀 : 2.29유로/2자녀:10.67유로+봉급3% 3자녀 : 15.24유로+봉급8%
초과근무수당	• 시간당 단가 : 연봉총액의 1,820분의 1×1.27
야간근무수당	• 시간당 0.17 유로 또는 0.97유로(21시~6시)
위험수당	• 난이도에 따라 시간당 1.03/0.31/0.15유로 차등지급
성과수당	• 동일직급 최고호봉 봉급액의 18% 범위내
전산업무수당	• 공휴일 전신업무담당자에 0.97~2.11 유로 지급

117) 직무상여지수(NBI)제도 :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자신의 원래 봉급지수에 해당직위에 책정된 직무상여지수(NBI)를 더하여 정하는 제도

1.4 캐나다[118)]

□ 1960년대 캐나다 군의 통합 이후, 캐나다 정부는 군과 일반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동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군과 일반 공무원 모두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기 때문임.

○ 두 집단이 단체교섭을 통해 대정부 협상에 임하여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음.

□ 1970년대 이후 공무원 보수에 대한 분석을 총 보수(Total Compensation) 관점에서 시행함.

○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고용자의 보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본급, 연금, 퇴직 위로금, 추가근무수당 등 모든 보수를 합하여 총 일한 시간(연가, 병가 제외)으로 나눈 시급개념으로 비교함.

□ 현재 캐나다 군의 월 급여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4-6〉 캐나다군 계급별 봉급액(단위: 만원)

계급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소장	중장
금액	387	410	674	911	1055	1199	1630	2092

□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수당은 부사관, General Service Officers 기준으로 총 보수에서 4% ~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군 보수와 공무원 보수가 비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의 비중이 낮음.

○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통된 수당을 제외하고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당의 비중임.

118) http://www.cmp-cpm.forces.gc.ca/dgcb-dgras/ps/index-eng.asp

□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캐나다 군의 수당구조는 아래와 같음

〈표4-7〉 캐나다군의 수당체계

구 분	내 용
낙하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255달러 ~ 373달러까지 지급
구조전문가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494달러 ~ 751달러까지 지급
비행승무원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311달러 ~ 591달러까지 지급
지상근무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411달러 ~ 782달러까지 지급
해상근무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494달러 ~ 751달러까지 지급
저압챔버수당	일당 14.83달러 지급
잠수함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451달러 ~ 890달러까지 지급
추가위험수당	위험강도에 따라 매달 182달러 혹은 349달러 지급
특수작전수당	작전에 따라 매달 705달러 ~ 1542달러까지 지급
조사수당	일당 20.08달러 지급
민간피복지원수당	요구되는 복장에 따라 매달 103달러 ~ 137달러까지 지급
다이빙수당	누적 점수에 따라 매달 137달러 ~ 248달러까지 지급

2 시사점

2.1 외국군 보수체계와의 비교 분석

□ 현재 한국군의 보수체계는 보수의 기본인 봉급의 비율이 적고 수당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의 인건비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거 빈약했던 국가재정으로 인해 공무원 봉급의 현실화가 어려웠음.

○ 고도성장을 이룩한 이후에도 공무원 봉급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군 보수는 공무원 보수와 연동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인상이 용이한 수당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전체 보수수준의 인상을 도모하게 됨.

□ 한국 및 외국군(미국군, 일본 자위대, 프랑스군, 독일군)의 보수체계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4-8〉 한국 및 외국군의 보수체계

구 분 (수당갯수)	기 본 급 여		특 별 급 여	
	봉급	수당	일반수당	특별수당
한국(24)		가족, 주택, 피복	기말수당외 11종	항공수당외 8종
미국(14)		주택, 생활보조	피복, 별기	전투위험외 9종
일본(39)		가족, 주택, 통근	기말수당외 11종	잠수작업외 23종
프랑스(20)		-	생계, 교육외 11종	항공외 6종
독일(5)		-	근무지수당	영외근무외 3종

자료: 곽용수 · 이정언, 전게서, p.112.

○ 한국 군의 경우 미국, 독일 등 서구국가의 군인 보수체계보다 수당의 종류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그렇지만 프랑스군의 보수체계도 한국 군의 그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 자위대의 경우 오히려 수당의 종류가 한국군보다 많음.

○ 그렇기 때문에 보수체계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봉급과 수당의 비율을 고려해야 함.

□ 한국, 미국, 일본 군의 봉급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4-9〉 각국의 봉급비율

구 분	봉급 비율 (봉급 / 월 평균 급여)	비 고
한 국	34.2%(대령 12호봉 기중)	동일근속년수
미 국	70.5%(대령 23년차)	
일 본	62.1%(대령 4호봉 기준)	

자료: 곽용수 · 이정언, 전게서, p.112.

○ 한국 군의 월 평균급여 중 봉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로 각종 수당으로 급여의 65% 이상을 충당하는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보이고 있음.

○ 일본 자위대의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당의 종류는 한국군보다 많지만 수당이 월 평균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군의 절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한국 군이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수당을 이용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2.2 소결론

□ 용이한 보수인상의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수당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재의 보수체계를 가지게 됨.

○ 기본급의 비율을 총급여 대비 적정수준(일반 사기업 수준, 외국군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유사수당의 통폐합을 통한 단순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 유사수당 통·폐합을 통한 보수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보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것이기에 군 구성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 조정, 유사수당의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적극 알릴 필요성이 있음.

3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3.1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 직무 및 근무 관련 수당의 경우 위험이 상존하는 근무특성과 직무성격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군인에게 필요한 수당이라고 할 수 있음.

○ 관리업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수당 지급방식만 다르고,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상여수당은 현재 경직성 인건비로 사실상 봉급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봉급에 산입하여 보수구조를 단순화하여야 함.

○ 성과상여수당을 제외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의 경우 봉급에 산입.

□ 군인의 생계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인 가계보전수당의 절대액이 과소하여 보전대책이 필요함.

○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족수당이나 주택수당은 절대액 측면에서 너무 과소하고, 실 생계비에 전혀 연동되어 있지 않음.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이 필요한 대학자녀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 확대가 필요함.

○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교통보조비 등의 수당을 가계보전수당으로 통합[119]하고, 실 생계비를 반영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

3.2 소결론

□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등은 기본급 개념의 성격으로 봉급에 산입하는 방안임.

□ 관리업무수당은 직책수당의 성격이며 시간외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의 성격이지만 업무수행이라는 단일목표에 부합됨으로 수당 단순화를 위해 초과근무수당으로 통합하는 방안임.

119) 곽용수, 『군인 수당체계의 보수구조적 접근』 “군 수당체계 개선방안”국방정책연구 2000년 가을 특집 논문

□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은 생활보조수당의 성격으로 가계보전수당으로 통합하는 방안임.

□ 연가보상비는 초과수당 성격이며,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생활보조수당이고 직급보조비는 직책수당의 성격이지만 복리후생비로 단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표4-10>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①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봉급에 산입)
	② 관리업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으로 통합)
	③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가계보전수당으로 통합)
	④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로 통합)

Ⅴ. 결론 및 건의

1 결 론

1.1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필요성

□ 법규 및 운영 측면

○ 군인보수는 공무원과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인보수법과 공무원 보수 관계규정상의 일률적 적용으로 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군인보수가 공무원 보수에 연동됨으로써 군 직업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준 및 체계결정 제한

○ 보수정책 및 운영상의 관점 : 수당의 증·신설로 수당의 봉급화 등 편법적 보수인상

□ 불균형적인 보수체계 측면

○ 기본급이 전체 보수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전체보수액의 46.5%[120] 수준)

○ 봉급의 생계비 보전기능 미약

□ 군의 특수성이 미반영된 보수체계 측면

○ 군 특수성이 결여된 임금수준 결정

○ 공무원보수규정의 제약을 받는 군인보수법[121] : 군인 별도의 보수조정 / 개선 곤란

○ 기형적인 보수체계

○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문제 및 예하부대 건의사항 반영 제한[122]

120) 원천수, 군인보수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2002, p.57.
121) 군인보수법은 보수결정 3가지 기본원칙(사정적용의 원칙, 균형유지의 원칙, 보수결정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군인보수법(2000.12.6. 법률 제6290호) 과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음.
122) 육군본부, 『'14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 육군본부 복지정책과. 2013.2.

1.2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관련 유리 및 불리점[123]

□ 첫째,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시 유리 / 불리점

유리한 점	불리한 점
①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보수체계 운용이 가능함 ② 독자적인 보수규정 운용이 가능함 ③ 열악한 보수수준의 개선이 가능함 ④ 불균형적인 보수체계 개선 가능함 ⑤ 독자적인 보수정책 추진이 가능함	① 공무원수당규정 및 보수규정의 미적용으로 기존 공무원 지급 수당의 혜택이 불가능함 ② 독자적인 시행령 운용에 따른 예산 및 인력소요 증가 ③ 독자적인 시행령 제정의 어려움 (정부정책, 홍보, 대국회 활동 등)

□ 둘째, 현행 군인보수법을 계속 유지할 경우 유리 / 불리점

유리한 점	불리한 점
① 군인보수법이 존재하여 시행령 재 제정의 법적인 근거가 유지됨 ② 1983년 군인보수법시행령 폐지에도 불구하고 보수법이 존재하여 군인 및 군무원해파수당규정 및 군인특수근무수당규칙, 3종의 훈령 제정이 가능함 ※ 3종 훈령 1. 군인등의장려수당 지급훈령 2. 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훈령 3. 군무원 임시직 경력산정훈령 ③ 시행령 부재에도 군인보수법이 존재하여 최소한의 군 특수성 반영이 가능함	① 국가공무원법과 위임관계에 있어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보수체계 운용이 어려워짐 ② 현행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군인보수법시행령의 폐지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보수수준의 결정 및 인상시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움 ③ 군인보수가 공무원 보수에 연동됨으로써 군 직업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준 및 체계결정이 제한됨

□ 셋째, 군인보수법 폐지시 유리 / 불리점

유리한 점	불리한 점
① 국가공무원법 적용으로 예산 및 인력소요 절감됨 ② 공무원과 보수수준 측면에서 동일법 적용으로 형평성 보장 가능	① 군인의 합리적인 보수수준 결정에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음 ② 폐지시 국가공무원법 적용으로 독자적인 보수법 운용이 불가함

123) ①안보경영연구원 연구팀원의 『군보수체계 자료분석』결과 ; ②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 급여담당관 의견 종합 결과; ③ 김종립,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201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3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방안

□ 법규의 제정 체계는

○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며
○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 시행규칙은 주무장관(국방부장관)이 제정하도록 되어있음.

□ 현행 군인보수법은

○ 시행령이 폐지된 법으로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독자적인 보수정책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제도에서 시행되는 군인보수 업무 영역의 명확성으로 국방인력운영 안정화 및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잠식시키기 위하여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이 필요함.

□ 방 안

○ 1983년 폐지된 군인보수법시행령을 재 제정함을 원칙적인 방안으로 제시함

1.4 수당논리 및 필요성

□ 위험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 필요

□ 우수자원 획득 및 유출방지를 위해 보상 필요

□ 공무원과 비교시 미지급 수당 지급으로 형평성 유지 필요

1.5 군 특수성 및 일반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당 개선방안

□ 수당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구 분	세 부 항 목
미지급/ 축소지급 수당(4개)	① 야간근무수당 ② 휴일근무수당 ③ 당직근무비④ 직책별특정업무비
장기동결 수당(4개)	⑤ 해외파견근무수당⑥ 부사관장려수당(장려수당 7호)⑦ 주택수당 ⑧ 교통보조비
신설 및 확대 지급 수당(10개)	⑨ 대우군인수당 ⑩ 특수임무 출동수당 ⑪ 군인가족별거지원수당 ⑫ 가족이전정착지원금 ⑬ 항공수당 ⑭ 위험근무수당 ⑮ 장려수당 1호(대포병탐지레이더) ⑯ 장려수당 3호(응급구조사) ⑰ 장려수당 4호(간호부사관) ⑱ 특수지근무수당

2 건 의

□ 단기적으로는 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수당개선 도모가 필요함.

○ 수당 개선은 안전행정부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92호)에 따라 개선

○ 문서규정에 의거 매년 5월31일까지 국방부 수당 개선안 안전행정부 제출/심의

○ 군인/군무원 처우개선관련 봉급 및 수당의 인상, 규정 개정 절차 준수[124)]

구 분	세 부 항 목
(1) 소요제기	○각군 및 국직부대 처우개선안 소요제기: 매년 1~3월
(2) 처우개선안 검토조정	○각부대 소요제기안을 개별사업으로 검토 : 4~5월
(3) 검토결과 보고	○검토결과 보고 및 통보 : 5월초
(4) 정책심의 및 정책회의/보고	○계획예산관실 주관하 시행, 정책심의 결과 재조정
(5) 관련부처 협의	○처우개선안 관련부처 협의(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6) 개정안 검토	○관련부처 협의결과 승인이되면 관련공문을 토대로 개정규정 작성
(7) 개정안 제출	○개정안 작성 보고(장관)후 관련부처 송부 -공무원보수/수당규정(대통령령):안전행정부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에규칙(국방부령):법제처
(8) 공 포	○국방부령은 심의 의견 접수후 관보로 공포 ○대통령령은 법제처 주관 차관, 국무회의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후 국회심의 의결 및 공포

○ 군인 각 수당별 제시된 개선방안 규정 및 규칙 개정

○ 군인군 특수성 반영 수당의 현실화 추진 : 개선방안 추진계획 적극 시행

□ 장기적으로는 1983년 폐지된 군인보수법시행령을 재 제정하여 군인보수 업무 영역의 명확성은 물론 국방인력관리의 효과성 도모가 필요함.

○ 시행령 재제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주최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홍보효과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124) 국방부, 『군인·군무원보수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주요업무추진절차, 2011.10, pp.157~158.

참 고 문 헌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통계』, 2009
2. 곽용수,이정언『군 보수체계 개선 연구』보수구조 분석을 중심으로(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8)
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2013)
4. 국방운영세미나,『국정과제와 중기 국방예산 정책방향』2013. 5.28
5. 국방부,『군인·군무원의 보수정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11.10)
6.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mil.kr), 국방정책 (2013)
7. 국방부,『병 봉급 및 수당 인상 세부내역』참고자료 2013. 5.20
8. 국방부,『군인수당 현실화 방안』2012. 11. 6
9. 국방부,『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국방부예규 제526호 (2013.3.8)
10. 김보현『군인보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대학원, 2006
11. 김세영『임금의 이해』(서울:한국경제신문사,1986)
12. 국방부,『군인보수 관련 국회 국정감사 내용』참고자료 2013. 5.20
13. 국방부 인터넷(http://.mnd.mil/kr) -법령정보-국방부 관계법령-『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2013.6.5
14. 강성철,『군 사기증진책 실태와 개선방안』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15. 김종립 『경찰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2011.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6. 뉴시스 ,『김형태의원 국방부 국감자료 분석 결과』2012. 10.15
17. 신경식,이한솔『미 육군과 한국육군의 복지문화 비교연구』,한국군사논업 제67집 제2권, 2011.8
18. 미국 국방백서
19. 미국 연방 법전 Chapter 53, Section 5303.
20. 문채봉, 최광현 주간국방논단『군 가족의 별거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전략』2012.9.17, 한국국방연구원
21. 안전행정부,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3.2
22. 안전행정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참고자료 2011.1.10.
23.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포털(http:// pac.mospa.go.kr) 제도 바로알기-공무

원보수제도『업무보고』 (2013.5)
24. 육군본부, 『'13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지시』2013. 2
25. 육군본부, 『14년도 인건비 예산편성 소요제기』2013. 2
26. 육군본부, 『해외파견근무수당 개선방안 검토』 2013.5
27. 오성호・이선우『외국의 공무원 보수제도』(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8
28. 조선일보, A 34면 『만물상 "군인 자녀 멘토단"』2013.5.24
29. 중앙일보, 정치면 『軍 부사관-특전사, 다음 달부터 수당 인상』2012.3.9.
30.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 인사개혁 백서』,2005
31. 지방닷컴(http://www.nlnc.co.kr)『창의와 실용으로 만드는 군인복지기본계획』 국방부 2011.9.15.
32. 최병순,『국방인력관리론』(서울 : 국방대학교, 2003)
33. Department of Defense(US), 『Pay Table』2006
34. 미국군 수당체계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www.dfas.mil)
35. 영국군 수당체계 인터넷 검색사이트 (http://www.armedforces.co.uk/armypayscales.htm)
36.『국가공무원법』
37.『공무원보수규정』
38.『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9.『군인보수법』
40.『군인보수법시행령』
41.『군인사법』
42.『군인특수근무수당규칙』
43.『군인 및 군무원해파수당규정』
44.『훈령』

(공 란)

부록 #1. 봉급 및 일반수당 현황

□ 봉급 / 일반수당 세부내용

<table>
<tr><th>구 분</th><th>지 급 내 역</th><th>비 고</th></tr>
<tr><td>봉 급</td><td>• 계급별 호봉별 정액
•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봉급표)</td><td>• 공무원보수 규정</td></tr>
<tr><td>정근수당</td><td>• 봉급액의 0～50%, 연2회 지급(1,7월)
<table>
<tr><th>근무연수</th><th>지급율(%)</th><th>근무년수</th><th>지급율(%)</th></tr>
<tr><td>1년미만</td><td>미지급</td><td>7년미만</td><td>봉급의 30</td></tr>
<tr><td>2년미만</td><td>봉급의 5</td><td>8년미만</td><td>봉급의 35</td></tr>
<tr><td>3년미만</td><td>봉급의 10</td><td>9년미만</td><td>봉급의 40</td></tr>
<tr><td>4년미만</td><td>봉급의 15</td><td>10년미만</td><td>봉급의 45</td></tr>
<tr><td>5년미만</td><td>봉급의 20</td><td>10년이상</td><td>봉급의 50</td></tr>
<tr><td>6년미만</td><td>봉급의 25</td><td></td><td></td></tr>
</table></td><td>• 공무원수당 규정</td></tr>
<tr><td>가족수당</td><td>• 배우자 : 40,000원,
• 기타 : 1명당 20,000원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이후 자녀는 가산금 80,000원 추가지급
(다만,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0,000원 지급)</td><td>• 공무원수당 규정</td></tr>
<tr><td>정근수당
가산금
(장기근속수당)</td><td>•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20년이상</th><th>15년이상</th></tr>
<tr><td>군 인</td><td colspan="2">100</td><td>80</td></tr>
<tr><td>일반직공무원</td><td colspan="2">100</td><td>80</td></tr>
<tr><th>구 분</th><th>10년이상</th><th>7년이상</th><th>5년이상</th></tr>
<tr><td>군 인</td><td>60</td><td>50</td><td>40</td></tr>
<tr><td>일반직공무원</td><td>60</td><td></td><td>50</td></tr>
<tr><th>구 분</th><th>5년미만</th><th>장기하사</th><th></th></tr>
<tr><td>군 인</td><td>30</td><td>15</td><td></td></tr>
</table>
※추가가산금 : 20년 이상 10,000원, 25년 이상 30,000원</td><td>• 공무원수당 규정</td></tr>
<tr><td>성 과
상여금</td><td>• 대상 : 하사~소장
• 국방부 : 부서별 평가 적용(기준호봉의 130%)
- 등급/지급액 : 2개 등급 이상/86%~174%</td><td>• 3월 지급</td></tr>
<tr><td>봉급조정
수 당</td><td>• 지급액 : 연도별 상이('02년2.4%, '03년2.4%, '04년2.4%)
※ 당해연도 후반기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연도 1월에 기본급에 합산('07년 이후 미지급)</td><td>• 11월 지급</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지 급 내 역</th><th>비 고</th></tr>
<tr><td>주택수당</td><td>• 정부가 제공한 군 주거시설 미입주자 중
장기하사～중령(월 80,000원)</td><td>• 공무원수당 규정</td></tr>
<tr><td>관리업무 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td><td>• 관리업무수당
소령(4급)이상 봉급의 9% 일률적으로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대위(5급)이하 초과근무실적에 따라 최소 28시간에서 최대 67시간까지 지급(예산범위 내)
* 세부지침은 각 군 본부에서 지침으로 하달</td><td>• 공무원수당 규정
• 공무원수당 업무 처리 지침</td></tr>
<tr><td>자녀학비 보조수당</td><td>•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학비전액을 지원</td><td>• 공무원수당 규정</td></tr>
<tr><td>교 통 보조비</td><td>• 군인의 경우 대령이하 하사까지 지급
• 일반직의 경우 1급 이하에게 지급
<table>
<tr><td>군 인</td><td>대령</td><td>중령-대위</td><td>준위-상사</td><td>중·소위</td><td>중사</td><td>하 사</td></tr>
<tr><td>일반직</td><td>1-3급</td><td>4-5급</td><td>6-7급</td><td>8급이하</td><td></td><td></td></tr>
<tr><td>지급액</td><td>20만원</td><td>14만원</td><td>13만원</td><td>12만원</td><td>12만원</td><td>7만원</td></tr>
</table></td><td>• 공무원수당 규정</td></tr>
<tr><td>직 급 보조비</td><td>• 계급(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table>
<tr><td>구 분</td><td>장관
대장</td><td>차관
중장</td><td>소장</td><td>1급
준장</td><td>2급
대령</td></tr>
<tr><td>지급액</td><td>1,240</td><td>950</td><td>900</td><td>750</td><td>650</td></tr>
<tr><td>구 분</td><td>3급
중령</td><td>4급
소령</td><td>5급
대위</td><td>중위
소위</td><td>준위</td></tr>
<tr><td>지급액</td><td>500</td><td>400</td><td>250</td><td>105</td><td>180</td></tr>
<tr><td>구 분</td><td>6급
원사</td><td>7급
상사</td><td>8,9급
중사</td><td>하사</td><td></td></tr>
<tr><td>지급액</td><td>155</td><td>140</td><td>105</td><td>95</td><td></td></tr>
</table></td><td>• 공무원수당 규정</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지 급 내 역</th><th>비 고</th></tr>
<tr><td>직책별 특정 업무비 (월정 직책급)</td><td>•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자에 지급
• 지급금액 (단위: 천원)
<table>
<tr><td>계 급</td><td>1급 기관장,</td><td>1급, 보조기관</td><td>2, 3급 기관장</td><td>2, 3급 보조 “갑” 대장</td><td>2, 3급 보조 “을”</td><td>중장</td><td>소·준장</td></tr>
<tr><td>지급액</td><td>1,125</td><td>1,050</td><td>975</td><td>900</td><td>825</td><td>750</td><td>700</td></tr>
<tr><td>계 급</td><td>대령 “갑”</td><td>대령 “을”</td><td>복수직 3급“갑” 대령“병”</td><td>복수직 3급“을”</td><td>4급 보조 기관 “갑”</td><td>4급 보조 기관 “을”</td><td>복수직 4급 중령 “갑”</td></tr>
<tr><td>지급액</td><td>600</td><td>550</td><td>500</td><td>450</td><td>350</td><td>300</td><td>150</td></tr>
</table>
※ 갑·을 구분 기준
갑 : 직제상 정원6명 이상
을 : 직제상 정원5명 이하
※ 대령“병” : 교육생, 단독직위자
※ 중령“을” : 12만원</td><td>• 세출 예산 집행 지침</td></tr>
<tr><td>명 절 휴가비</td><td>• 국가공무원/군인에게 명절에 지급(연2회)
• 봉급의 120% 지급(연)
<table>
<tr><th>지급대상일</th><th>지 급 액</th></tr>
<tr><td>설 날
추 석</td><td>· 지급대상일이 속하는 월의 월봉급액의 각각 60%</td></tr>
</table></td><td>• 공무원 수당 규정</td></tr>
<tr><td>가 계 지원비</td><td>• 봉급액의 16.7%(매월 지급)</td><td>• 공무원 수당 규정</td></tr>
<tr><td>전역자 / 휴가자 여비</td><td>• 병에게 전역/휴가시 여비, 식비, 숙박비 지급
• 지급금액(10년)
- 교통비 : ㎞당 88원, 식비 : 1식당 4,000원
숙박비 : 1일에 12,000원, 현지교통비 : 1,200원
선박비 : 신고요금 실비(2등객실)
※ 정기휴가시 기본 효도휴가비 1인 10,000원 지급(복무 중 3회)</td><td>• 휴가자 여비 지급 지침</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지 급 내 역</th><th>비 고</th></tr>
<tr><td>특수지근무
수 당</td><td>• 군인/군무원 중 특수지근무자에게 수당 지급
<table><tr><th>구 분</th><th>지 급 대 상</th><th>지 급 금 액</th></tr><tr><td>갑지역</td><td>· 비무장지대, 서해5도, 울릉도
접적해역 상주 근무자</td><td>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65만원</td></tr><tr><td>을지역</td><td>· GOP, 해안초소 상주근무자, 800m 이상 고지 상주근무자</td><td>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32만원</td></tr></table>* 가산금 지급 : 5,000원 ~ 30,000원</td><td>• 공무원 수당 규정</td></tr>
<tr><td>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 당</td><td>• 병으로 복무하다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지급
- 지급대상 : 현역의 일병/상병/병장,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예비역의 병장/하사
- 지 급 액 : 임용당시 단기하사1호봉 12개월분
* 복무월수별 차등지급 가능(각 군 위임)</td><td>•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 지급 규정</td></tr>
<tr><td>연 가
보상비</td><td>• 공무원 중 법정연가일수 중 연도 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
- 지급대상 : 군인의 경우 소장이하
- 법정연가일수 : 21일
- 최대지급일수 : 20일
- 지급금액 : 미실시 연가일수×월봉급액/24</td><td>• 공무원 수당 규정</td></tr>
<tr><td>해외파견
근무수당</td><td>•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외국에 파견중인 군인/군무원
- 지급금액 : 임무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결정
- 소령 기준시(월)
· 레바논 : 2,918,000원/월
· 네 팔 : 3,120,700원/월</td><td>• 해외파견 근무 수당 지급 규정</td></tr>
</table>